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李康漢*

I. 머리말	III. 이후의 변동
II. 충선왕대 문산계 개편의 특징	IV. 맺음말

• 국문초록

충선왕은 재위기간 동안 두 차례 문산계를 개편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의 복위년(1308) 문산계를 검토하였다. 충선왕 복위년 문산계는 관계(官階)들의 다양한 명칭으로도 주목되지만, 기존 문산계의 대부계가 종1품에서 5품까지였던 것과는 달리 정1품에서 4품까지가 대부계였던 특징이 있다. 1308년 문산계의 가장 큰 의미는 고려 전·중기 문산계의 관직-관계 품급 불일치 현상을 해결했던 점에 있지만, 몇 가지 시행착오도 내포하였다. 이에 1310년 2품계 및 5품계를 조정했는데, 재상의 관직 품급에 맞춰 고위 관계의 품급을 조정하고 5품 관직자들도 달래기 위함이었다. 이후 충숙왕대인 1325년을 전후하여 정1품 관계를 세분하고 충선왕대의 통헌대부를 충렬왕대의 봉익대부로 개명했으며, 14세기 중·후반인 공민왕대에는 문산계 대부계의 위상 자체가 충선왕대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도 감지된다. 충선왕대 제도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충선왕 문산계는, 14세기 100여 년간 운영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 문산계 연구에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충선왕, 문산계, 대부계, 관직, 관계, 품급, 충숙왕, 공민왕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교수

I. 머리말

이른바 ‘문산계(文散階)’는 문반 또는 문·무반에 주어졌던 관계(官階)를 지칭하며, 관료가 수여받을 수 있는 관직의 품급을 표식하는 역할을 한다. 문산계는 고려에서도 운용됐으며, 11세기 후반인 문종대에 완성되었다. 다만 문종 문산계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고려 전·중기의 문산계’에 해당한다. 고려후기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두 종의 문산계, 즉 1275년 이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렬왕대 문산계와¹⁾ 130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충선왕대 문산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²⁾

이 두 문산계 중 충렬왕대 문산계는 1308년까지 30여년 남짓 사용된 반면, 1308년 출범한 충선왕대 문산계는 고려말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공민왕대 두 차례(1356~1361, 1369~1371) 그 사용이 잠시 중지됐을 뿐 100여년 가까이 운영됐던 바, 충선왕대 문산계 역시 고려후기의 대표 문산계로서 (200년간 사용된 문종대 문산계 못지않게)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제도라 하겠다.

충선왕대 문산계는 그 관계별 명칭들이 독특하기도 하거니와,³⁾ 최고관계가 기존의 ‘종1품’에서 ‘정1품’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부계의 폭 또한 종래의 ‘1~5품’에서 ‘1~4품’으로 축소되는 등 기존의 문종 문산계와는 매우 달랐다. 그럼에도 그 연유가 거의 연구되지 않은 상황인데, 충선왕 즉위년, 복위년, 복위2년의 문산계가 『고려사』 백관지에 상세하게 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부족은 일종의 방치에 가깝다. 충선왕이 문산계를 이러한 모습으로 설계한 연유는 물론, 그것이 충숙왕대와 공민왕대 어떻게 변해 갔는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1) 이에 대해서는 박용운, 「고려시대의 문산계」, 『진단학보』 52, 진단학회, 1981과 이강한, 「고려후기 충렬왕대 문산계(文散階)의 구조와 운용」, 『진단학보』 116, 진단학회, 2012, 그리고 이정훈, 「충렬왕대 문산계의 복원과 운영-대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1298년 8개월간 운영된 충선왕 즉위년 문산계는 논외로 하며, 본고의 ‘충선왕(대) 문산계’는 충선왕 복위 당시인 1308년 출범하여 1310년 조정된 문산계를 지칭함을 일러둔다.

3) 충선왕대의 문산계는 충렬왕대 문산계는 물론 중국의 여러 문산계(송·금·원대)와 비교해도 일치하는 명칭이 매우 적고, 여러 사적을 찾아봐도 그 존재나 연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관계명 내의 개별 글자들은 중국과 한반도 관계명에 흔히 등장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충선왕이 동북아시아 여러 관계명들의 글자들을 새로이 조합하여 나름의 문산계를 창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충선왕의 1308년 새 문산계 출범이 기존 관계의 어떤 부분을 조정하려 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1310년 개편의 배경도 살펴보고 하겠다(대부계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충숙왕대의 조정은 왜 단행되었고, 공민왕대에는 충선왕 문산계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검토해 보려 한다. 고려 후기 정치사연구에 기여할 제도사적 해명을 시도함은 물론, 충선왕의 문산계 개편이 그의 다른 개혁들과 궤를 같이 한 측면 또한 환기하고자 한다.

II. 충선왕대 문산계 개편의 특징

1. 1308년 출범 당시의 특색

1) 문산계 상한선의 조정 (종1품→정1품)

고려 문종 문산계나 중국 송·금대 문산계(‘종1품’에서 시작)와는 달리, 충선왕 문산계는 ‘정1품’(삼중대광)에서 시작한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1품 관계임에도, 충선왕대는 물론 충숙왕대 이후에도 관료들에게 자주 부여되었다.⁴⁾

충선왕이 문산계 최고관계를 종1품에서 정1품으로 격상시킨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표 2>를 보면 원제(元制)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표 2>에서도 확인되듯이 고려 전·후기 문산계 및 중국 송·금·원대 문산계를 통틀어 정1품에서 시작되는 문산계로는 충선왕 문산계와 원대 문산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충선왕 문산계가 원제국 문산계를 참조하거나 모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고려의 기존 제도와 원의 문물을 결합시키는 데 관심이 많았던 충선왕대의 변화로는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충선왕에게는 정치적 위험인 동시에 도박일 수도 있었다. 그는 1298년 문종관제를 일부 되살린 후 조기 퇴위당한 바 있었고, 이에 제국과의 충돌을

4) 『홍규(洪奎) 묘지명(1316)』 “庚戌年(1310), 以三重大匡·守僉議政·上護軍·行漢陽府尹益城君.”; 『김심(金深) 묘지명(1339)』 “(지대)4年(1311), 加…三重大匡·密直使·領會議都監事上護軍化平軍.” 아울러 정1품의 다음 관계인 중대광(종1) 및 대광(정2품 상)도 14세기중엽까지 자주 하사되었다(<표 1> 참조).

피하기 위해 복위년 개편에서는 문종대와 전혀 다른 관제를 출범시킨 것이었는데, 백관구조의 또 다른 축이었던 문산계의 최고점은 제국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제국과의 또 다른 충돌의 빌미를 만든 셈이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즉위년의 상황이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강행한 충선왕의 의도가 자못 궁극해진다. 고려의 관제가 반드시 원제국의 하위 관제로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가 고려의 예부시를 응거시로 바꾸어 원 제과의 하위 제도로 만들어 버린 것을 감안하면⁵⁾ 그렇게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위 조치가 “고려와 원제국은 하나이며(“一視同仁”) 따라서 제도도 일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관계의 명칭들만큼은 모두 제국과 다르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⁶⁾

이렇듯 충선왕의 의중을 외교적, 문물교류적 측면에서 가늠하긴 어렵다. 차라리 관계(官階) 자체가 관료 개개인의 위상을 좌우하는 동시에 국왕으로서의 관료사회를 통제할 중요장치였다는 점을 감안, 충선왕이 정1품 관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현실적, 정치적 배경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 항에서 살필 것이지만, 충선왕대 문산계는 그 상반위(上半位)에 해당하는 대부계가 통상적 문산계에 비해 좁다. 문종대 문산계나 송·금·원 문산계는 대부계가 5등급 이상으로 구성된 반면 충선왕 문산계는 4등급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부계의 모든 관계들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견 충선왕이 원제국 제도를 수용해 정1품에서 시작되는 문산계를 출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소된 대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목적으로 정1품 관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1품 관계의 출현 및 상용을 야기한 충선왕 문산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의 대부계의 축소는 과연 어떤 배경에서 단행된 것일까?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 이강한, 「고려 충숙왕대 科擧制 정비의 내용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6) 원제국 문산계의 경우 개부의동삼사부터 은청영록대부까지 총 6개의 관계가 모두 정1품에 몰려 있는 기형적 모습을 보이지만 충선왕 문산계는 그렇지 않았던 점 또한 양자 간의 차이이다.

2) 대부계의 축소(“1~5품” → “1~4품”)

전술했듯이 고려 문산계 대부계의 하한은 문종대까지는 ‘5품’이었다. 그런데 충선왕 복위년에 그것이 ‘4품’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러한 새 하한이 고려말까지 유지되었다(<표 3> 참조).

문종 문산계로부터의 현저한 이탈이었던 만큼, 충선왕의 설계가 혹 중국의 현행제도나 구제(舊制)를 참조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제국 문산계의 경우 송대 문산계처럼 ‘5품’까지가 대부계였고, 금대 문산계는 심지어 6품까지가 대부계에 해당하였다(<표 4> 참조). 따라서 충선왕이 중국의 제도를 원용한다는 상징성을 노린 것은 분명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자신의 문산계를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문산계 자체의 문제만을 고려해서는 그 연유가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고려 관료들이 충선왕대 이래 문산계와 동반 보유했던 ‘관직’의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충선왕대 관계·관직 품급의 일체화

고려의 문산계가 처음으로 출범했던 문종대 이래, 고려관료들이 받았던 관계의 품급은 그들이 함께 수여받거나 갖고 있던 관직의 품급보다 2급 정도 낮았다.⁷⁾ 고려 관료들이 관직을 제수받을 때에는 그들이 보유한 관계보다 2급 정도 ‘높은’ 관직을 받는 것이 상례였다는 의미다. 그런 품급차가 발생한 원인은 미상이나, 제도적으로 이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격차는 고려후기에 접어들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찍이 박용운이 충선왕복위년(1308)을 기점으로 관료가 보유한 관직과 관계의 품급이 일치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⁸⁾

실제로 충선왕 복위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관료들의 관직 및 관계를 대조하면 그 점이 잘 확인된다. 다만 그러한 변화가 충선왕대 갑자기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충렬왕대에 관직과 관계의 품급차가 1품 내외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⁹⁾ 종래 고려 문산계의 문제가 선왕대에 점차 해소되어 가던 것을 목도한 충선왕으

7)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연구』 고려대출판부, 1997, 96~105면; 이정훈, 「고려전기 문산계 운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150, 국학연구원, 2010.

8) 박용운, 앞의 책(상동).

로서는, 차제에 관직-관계의 품급을 일치시킴으로써 문제를 일거에 혁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¹⁰⁾

그 결과는 14세기 전반 여실히 확인된다. 정3품(상) 정순대부, 정3품(하) 봉순대부, 종3품(상) 증정대부, 종3품(하) 증현대부 등 3품급 4개 관계 보유자들의 동반 관직들이 그를 잘 보여준다(<표 5> 참조). 예컨대 “정3품(상) 정순대부”를 보유했던 관료의 관력을 보면, 정순대부를 보유한 시기를 전후하여 비재신(상시, 정3품급), 비밀직(대언[승지], 정3품급)을 역임한 경우들이 더러 등장하고 삼사사 지사, 어사대 집의(정3·종3품급)를 역임한 경우도 간혹 등장하며, 6부의 상서(3품)와 지사(3~4품)를 역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즉 정3품(상) 관계인 정순대부와 정3품, 종3품 또는 3품과 4품 사이(3.5품)의 관직들이 대응되고 있어, 관계와 관직 품급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순대부의 바로 아래 관계인 “정3품(하) 봉순대부”도 마찬가지다. 6부 지사, 어사대 집의, 비밀직 (및 실무부서 수장, 후술) 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 정순대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3품, 3.5품 관직들과 대응되었음이 확인된다. “종3품(상) 증정대부”도 그를 보유한 관료들의 동시기 역임 관직이 비밀직(지신사, 정3품), 사복정(정3품), 어사대(사헌부) 집의(종3품), 삼사 좌윤(종3품) 등으로 확인된다. “종3품(하) 증현대부” 또한 비밀직(지신사·부대언, 정3품급)이나 어사대 집의(정3·종3), 그리고 3품급 부서의 수장(사복정, 전교령) 등 3품 관직들과 함께 등장한다.¹¹⁾

9) 이강한, 「고려 후기 ‘충렬왕대 문산계(文散階)’의 구조와 운용」, 『진단학보』 116, 진단학회, 2012. 관직-관계 품급의 불일치 현상을 고려인들이 문제시했는지 또는 당연시했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것이 충렬·충선왕대에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만큼은 고려 후기에 접어들어 그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왕을 비롯한 정치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0) 충선왕이 그런 문제의식을 행동에 옮긴 정황은 이미 1298년 즉위 당시에서부터 확인된다. 충선왕 즉위년 문산계의 정3품 관계에 해당하는 ‘정의대부’를 보유했던 김순, 박휘, 이행겸의 묘지명을 보면, 그들이 정의대부 보유 당시 가졌던 관직의 품급이 좌산기상시(정3품), 우승지(정3품), 6부 지사(3-4품 사이)나 상서(정3품) 등 모두 3품급에 해당한다(『김순(金恂) 묘지명(1321)』 “又改爲正議大夫集賢殿學士左散騎常侍 …… 是年(1298) 七月, 復爲密直司右承旨國學祭酒寶文閣學士知民曹事依前三字.”;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父諱輝, 正議大夫典法判書膺善府右詹事.”; 『박전지(朴全之) 처 최씨(崔氏) 묘지명(1316)』 “二女適華族. 二女適開城府記室參軍事李稷, 生五女一男. 李稷卽正議大夫刑部尙書寶文閣學士行儉之子也.”).

11) 한편 종3품(상) 증정대부 보유자의 관직이 정4품 비재신직(간의대부)인 사례, 종3품(하) 증현대부

이렇듯 관료의 보유 관계 및 관직 간 품급 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 충선왕대를 시작으로 고려정부 내에 본격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대부계의 축소라든가 충선왕대 문산계의 또 다른 특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② 관계-관직 품급 일체화에 따른 후유증 처리: 대부계의 축소

‘관직’의 경우, 고려 전·중기 이래 4품 관직과 5품 관직 사이에 위신상의 차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4품 관직 보유자가 5품 관직 보유자에 비해 갖는 몇몇 차대(差待)가 사료상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품 이상 관직자의 아들에게만 음직(蔭職)을 주거나,¹²⁾ 4품 이상 관료에게만 ‘부모 외 처까지 봉작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진 점을 들 수 있다.¹³⁾ 중요사안에 대한 회의 참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진달이 4품 이상에게만 요구된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12세기는 물론¹⁴⁾ 13세기 전반¹⁵⁾ 및 후반에는 그런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¹⁶⁾

보유자의 관직이 6부·어사대·삼사의 “4품” 직(6부의 의랑·총랑, 어사대의 장령, 삼사의 지사)인 경우도 없지 않아, 상기 원칙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는 상기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겠다.

- 12) 『高麗史』卷75, 志29 選舉 銓注 蔭叙, “肅宗位(1095), 詔, 職事四品以上, 及致仕員, 戶爵一子. 5年(1100) 2月, 詔, 兩京文武顯職四品, 及給舍中丞·諸曹郎中, 致仕見存者, 許一子蔭職.”; 高宗40年(1253) 6月, “詔, 宰樞及文武三品致仕見存者, 各許一子蔭官, 無直子, 許姪·女·收養子·內外孫一名, 承蔭, 先代宰樞·內外無名之孫一名, 許初職, 文武四品·給舍中丞·諸曹郎中·中郎將以上, 各許一子蔭職.”
- 13) 『高麗史』卷75, 志29 選舉 銓注 封贈之制, “肅宗位(1095), 詔, 散官四品, 職事常以上, 爵其父母妻, 散官五品, 職事七品以上, 爵其父母.”; 5年(1100) 2月, “四品以上, 封父母爵.”; 高宗40年(1253) 6月, “詔, 代代功臣, 各加封爵, 文武職事常·散官四品以上父母妻, 封爵, 職事七品·散官五品員父母封爵.”
- 14) 『高麗史』卷16, 世家16 仁宗9年(1131) 3月 甲辰制: “文官常叅以上及翰林史館·國學寶文閣·式目·都兵馬·迎送都監·行營錄事軍候員·武官四品以上, 各上封事言軍國利害.”; 卷18, 世家18 毅宗16年(1162) 4月 甲申, “以久旱再雩. 下詔曰: ‘朕臨政願理思與群臣同心合德日聞忠言施於有政上蒼天心下副民望. 其文武四品以上各言時政得失民間利害以備採擇.’”
- 15) 『高麗史』卷22, 世家22 高宗8年(1221) 9月 丁亥, “王召群臣四品以上於大觀殿問蒙古後使迎接可否, 王欲設備拒而不納. 群臣皆曰: ‘彼衆我寡若不迎接彼必來侵, 豈可以寡敵衆以弱敵強乎? 王不悅.’”; 15年(1228) 8月 丙辰, “詔曰: ‘東真潛據近地數寇邊鄙. 出軍追討即輒遁去, 追軍之還復入窺窬, 禦禦之術安在? 書曰: 《謀及卿士》宜爾文武四品臺省六品以上各以長策條上.’”; 卷23, 世家23 高宗19年(1232) 5月 癸卯, “四品以上又會議皆曰: ‘城守拒敵.’ 唯宰樞鄭叡太集成等曰: ‘宜徙都避亂.’”
- 16) 『高麗史』卷24, 世家24 高宗38年(1251) 10月 丙辰, “王命宰樞及文武四品以上議答詔或言: ‘太子親

‘관직’ 체계의 내부 위계가 그러했던 상황에서, 그 동반자격이었던 ‘관계’의 구조상 대부계가 (4품이 아닌) ‘5품’에서 시작되는 것은 사실 어색한 일이었다. 충선왕이 문산계 대부계의 하한을 5품에서 4품으로 올린 것도, 관직과 관계의 품급을 일치화시키는 상황에서 관직체계의 내부 위계 또한 관계체계에도 적용하려 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그러한 의도를 현실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계의 축소는 결국 대부계를 받을 수 있는 관료의 수가 줄어들음을 의미하므로, 관료들의 불만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관직의 위계를 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은 국왕으로서는 결코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이 대부계의 축소 및 5품 관계의 위상 격하(대부에서 낭으로)를 강행했다면, 그에는 좀 더 절실한 현실적 이유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렬왕대 이전에는 한 관료가 보유했던 관계와 관직의 품급차가 2품까지 벌어지곤 하였다. 3품 관직을 제수받은 이의 문산계는 여전히 5품급인 경우, 4품 관직을 받은 이의 문산계는 6품급, 5품 직을 받은 이의 문산계는 7품급인 식이었다. 이런 격차가 충렬왕대 접어들어서는 줄어들어 4품 직을 받은 이의 관계는 5품, 5품 직을 받은 이의 관계는 6품 정도인 상황이 어느 정도 정착하였다. 5품 관계를 보유했던 이들이 (이전에는 3품 관직을 받았다면 지금은) 4품 관직을 받고, 6품 관계를 보유했던 이들이 (이전에는 4품 관직을 받았다면 지금은) 5품 관직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달리 표현하자면 4품직을 받은 이들까지는 (5품까지 존재했던) 대부계를, 5품직을 받은 이들부터는 (6품부터 시작되던) 낭계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3품 관직을 보유한 이들 정도만이 문산계로는 ‘대부’에 해당했던 것이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충렬왕대에 접어들어서는 4품 관직을 보유한 이들도 ‘대

朝.’ 或言: ‘王老病未得親朝爲辭待更詰遣太子親朝未晚.’; 40年(1253) 10月 辛未, “命宰樞致仕及文武四品以上議却兵之策僉曰: ‘莫如太子出降.’ 王怒使承宣李世材詰之曰: ‘遣太子則可保無後患耶議從誰出?’ 宦者閔陽宣進曰: ‘崔侍中亦可其議.’ 王怒稍霽曰: ‘宰樞善圖之.’ 王又遣世材就崔沆問誰可使蒙軍者沆奏曰: ‘此非臣所決惟上裁之.’”; 42年(1255) 5月 戊戌, “令四品以上獻安民禦敵之策.”; 44年(1257) 11月 癸丑, “令四品以上議遣子入朝便否及備禦蒙古之策.”; 高宗45年(1258) 11月 丁未, “令文武四品以上陳禦蒙兵策.”; 卷26, 世家26 元宗10年(1269) 11월 庚申, “令三四品各以無名實封陳答詔便宜.”

부'로 행세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이렇듯 '대부'의 위상을 보유한 관료군이 기존의 3품직 보유자가 아닌 4품직 보유 자들로까지 확대된 것이 13세기말~14세기초의 새로운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아래 5품직 보유자들의 경우 여전히 '대부의 위상을 갖기에는 이른 존재'들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관료들에게 동일한 품급의 관직과 관계를 일률적으로 수여하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4품 이상 관직 보유자들은 물론 5품 관직 보유자들까지도 새로이 대부직을 제수받아야 할 판이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종래의 경우 대부의 위상을 인정받는 관직군이 3품급까지였는데, 이는 첨의부와 밀직사의 재신과 밀직, 비재신과 비밀직, 6부의 수장인 상서 및 어사대의 수장(대부), 부수장(집의·중승) 정도만 포함되는 집단이었다. 그런데 충렬왕대에 접어들며 4품 직 보유자들까지도 대부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6부로서는 상서뿐 아니라 지사와 시랑까지, 그리고 어사대(사헌부)로서는 서열3위(장령)까지도 대부의 위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부계 보유자들에게는 일정한 불만이었을 수 있다. 특권의 확대는 결국 특권의 희석을 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1298년 즉위한 충선왕도 의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의 즉위후 첫 일성 중 하나가 3품직의 중요성에 대한 강변이었음이 그를 잘 보여준다. 그는 1298년 1월 3품 관직을 일컬어 “재상 다음의 고위관직으로서 신중히 제수해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4품 관직자 중 자격이 되는 자도 3품직을 제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환기하였다. 그리고는 근래 5품 관직자가 서열을 건너뛰어 임명됨을 지적하면서, 그런 경우 파직시키라는 강경한 지시까지 내렸다.¹⁷⁾ 아울러 산관(散官) 봉작과 관련한 지시에서는 “4품 이상 및 이하”를 언급하던 종래와는 달리, ‘4품 관직자와는 구별되는 3품 보유자의 혜택’까지도 언급하였다.¹⁸⁾ 3품직을 위무하고, 4품직에게도 새로 획득한 대부계의 위상에 고무되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 것을

17) 『高麗史』卷75, 志29 選舉 銓注 選法, “(충렬왕)24年(1298) 正月, 忠宣王位, 教曰, 本朝三品之階, 貳於宰相, 未嘗輕授, 雖至四品, 容有年滿而未拜者, 近來, 或以五品超授, 致仕受祿者, 倍於顯官, 各領校尉以下, 困於國役, 而有終年未受祿者, 誠爲未便, 其以五品超授者, 有司論罷.”

18) 『高麗史』卷75, 志29 選舉 銓注 封贈之制, “忠宣王位, 教 …… 內外文武職事常以上·散官四品以上 父母妻封爵, 三品以上員, 除父母之封, 以祖曾祖, 請封爵者, 亦許之.”

당부한 셈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충선왕 본인 자신의 복위년 문산계 개편으로 인해, 특권층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발생한 셈이었다. 5품 관직 보유자까지 대부의 위상을 누리게 될 경우, 6부로서는 낭중(정랑·직랑), 어사대로서는 지평과 시어사가 지도 대부의 위상을 누리게 될 상황이었다. 이는 사실상 대부계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형해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의 위상을 독점하던 재추와 여러 비재신·비밀직 들은 물론, 6부와 어사대 등 핵심부서에서도 서열 1,2위 관직자들의 지배적 위상에 균열이 갔을 수 있다. 이는 다시금 내부 기강 문제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충선왕 본인이 원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5품 관직자들이 새 문산계 제도로 인해 엉겁결에 대부의 위상을 획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즉 그들을 ‘낭’의 위상으로 묶어 두고자, 부득이하게 대부계를 1-5품에서 1-4품으로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렬왕대의 추세를 이어받아 고려 전·중기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유 관계의 품급과 동일한 품급의 관직’을 관료들에게 제수하려 한 충선왕으로서는, 그러한 제도개혁이 또 다른 혼선을 낳는 것은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직-관계 품급 일치 원칙의 전격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수혜계층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면서 관료사회 내부의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김새가 연출되자, 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대부계 축소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충선왕이 복위년 문산계를 발족시키면서 3품급에 이례적으로 “정/중” 구분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부에 각기 “상/하”의 구분까지 두어 하나의 품급을 총 4등분한 것도 이해가 된다. 대부계의 축소로 발생할 일종의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개 등급의 대부계를 나누어 받던 관료들이 이제는 총 4개 품급의 대부계를 나눠 가져야 할 판이었으니, 그 중간부의 3품을 세분함으로써 관료들이 받게 될 문산계 간에 최소한의 차등이 유지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문제도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이 복위 당시 출범시킨 새 문산계를 불과 2년 뒤 조정한 것에서도 그를 엿볼 수 있다. 충선왕의 복위2년 개편에서 두드러지는 두 가지 변화, 5품계의 조정 및 2품계의 조정을 통해 충선왕의 1308년 문산계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그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 1310년의 조정

1) 5품계의 조정

충선왕의 복위년(1308) 문산계에는 5품 관계가 일반적 ‘정/종’ 구분도 없이 단품(單品)으로만 설정돼 있다(통직량). 같은 문산계의 4품은 정4품과 종4품으로 구분돼 있고, 2품과 3품은 정·종이 다시금 상/하로 세분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아마도 4품직 보유자들까지도 대부의 위상을 누리게 된 충렬왕대까지의 상황에서, 충선왕의 문산계 개편으로 드디어 새로이 대부계 진입을 노리던 5품들이 정작 대부계의 전격적인 축소로 여전히 낭의 위상에 머물게 된 것을 위로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정/종 구분으로 5품 관계 보유자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상황을 예방하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선왕은 2년 뒤 5품 통직량을 결국 ‘정5품’(통직량)과 ‘종5품’(조봉량)으로 세분하였다. 외견상 5품 관직자 중 정5품직을 수행하는 경우와 종5품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달리 해야 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다가온다. 정5품직 보유자에게는 정5품 관계를 주고 종5품직 보유자에게는 종5품 관계를 주는 것이 관직-관계 품급 일체화라는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논의를 위해, 4품 및 5품 문산계 보유자들의 동반 관직들을 살펴보자. 봉상대부(정4), 봉선대부(종4), 통직량(5품)이 그것이다(<표 6> 참조).

“정4품 봉상대부” 보유자의 경우 3품급 부서의 부수장(4품급, 전의부·전교부령·통례문부사), 장군(4품), 6부 시랑(정4품, 총랑·의랑), 어사대 장령(종4품) 등 4품직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4품 봉선대부” 보유자들 역시 여러 위(衛)의 호군, 사헌부 장령, 6부 의랑(시랑), 3품 부서의 부수장급(위위시의 소윤, 사재시의 부령) 등 4품직들을 역임했음이 확인된다. 5품 관계인 정5품의 통직량 보유자 역시 그 역임 관직은 모두 5품직으로 등장한다. 결국 4-5품급 관계 보유자들의 관직 품급 또한 4-5품급으로 등장해, 서로 일치하는 모습이 대체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봉상대부와 봉선대부 사례 중에서는 충선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견된다. 봉상대부 보유자가 낭중급(5품)을 역임하거나(김승용) 봉선대부 보유자가 현납(5품)을 역임한 경우(윤신길) 등 ‘4품 관계 보유자가 5품직을 수행’한 경우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서 살펴본 3품 관계 보유자들의 경우

에서도 더러 확인되는 것인데(3품 관계 보유자의 보유관직이 4품인 경우), 13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관계의 품급이 관직의 품급보다 낮았던’ 고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관직과 관계의 품급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심지어 양자가 ‘역전’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정부나 국왕이 조심하면 될 문제일 수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었다. 5품직을 수행하다가 4품 관계로 영전했는데 업무 연속상 계속 5품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이긴 했으나, 대부이나 아나야를 결정하는 4품과 5품의 경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4품 관계 보유자가 5품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불만만 관리하면 될 일이지만, ‘5품직 수행자가 4품 관계를 보유’하는 상황 자체는 정부내 기강 관리상 방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찌 되었든 4품 관계 보유자가 5품직을 수행하거나, 5품직자에게 4품 관계를 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관계-관직 품급 일치화’ 방침의 정착을 위해 관직-관계의 품급차가 1품 가까이 나는 것을 용인하기도 어려웠 거니와, 분쟁의 불씨도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려정부로서는 이런 경우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 ‘4품 관계 보유자로서 5품 관직을 역임’하던 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도, ‘5품 관직자로서 4품 관계의 보유를 희망’하던 자는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 관직-관계 운영에 있어 4품과 5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사례들이 간헐적으로라도 남아 있어, 5품 관직 보유자가 4품 관계(대부계)로 조기 진입할 여지를 봉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5품 관직자들의 그러한 잠재적 불만에 대한 충선왕의 우려, 그리고 그를 누그러뜨리려는 충선왕의 노력은 이미 복위때부터 확인된다. 그는 즉위시(1298년)만 하더라도 4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만 음직 수여를 허용한 종래의 관행을 재확인하고¹⁹⁾ 심지어 전술한 ‘초수한 5품 관직자’ 파직 지시까지 내렸으며, 1298년 관제개편에서 처음 도입한 광정원과 자정원의 내부에 굳이 4품직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5품직을

19) 『高麗史』卷75, 志29 選舉 銓注 蔭敘, “忠宣王位, 教曰, 宰樞, 及文武三品以上致仕見存者, 各許一子蔭官, 無子, 則甥姪·女·內外孫及收養子, 許一名初職, 先代宰樞, 內外孫無名者, 許文武初職, 四品及給舍中丞, 諸曹郎中·中郎將解官者, 勿論試攝, 各授一子蔭官·凡實行後, 爲外官者, 亦降等許蔭.”

차별하였다.²⁰⁾ 그러나 복위년에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복위년 개편에서의 여러 하위 관부들을 보면 수장을 6품급으로 삼은 관청이 없고 모두 4, 5품급으로 설정했음이 주목되는데, 5품과 6품 간 계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4품과 5품 간 계선은 약화시킨 듯한 정황이다. 아울러 1308년 3품 관료 자제의 음식 혜택을 언급하면서 ‘4품과 5품 관료 자제’의 음식 혜택을 ‘함께’ 언급해 주목된다.²¹⁾ 전술한 것처럼 종래의 음식 관련 기사에서는 4품 이하 관직자의 경우가 언급된 바 드물었고 충렬왕 대였던 1282년 5월에도 음서 혜택은 4품 이상 관직자에 한해 규정되었을 따름인데 비해,²²⁾ 1308년의 이 조치로 인해 5품직자 및 그 자제들이 4품직과 동일한 승음 혜택을 받게 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조치는 5품직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충선왕은 복위 후 5품직의 ‘심기 관리’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5품 관계의 변화 또한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통5품’으로 5품 관계 보유자들을 달래려 한 1308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보다 조금 더 높았던 ‘정5품’ 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종5품’ 관계를 신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종5품 조봉량은 일종의 ‘허계(虛階)’로 운용한 듯한데, 묘지명 등에 조봉량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 그것이 ‘실제 제수된 바 없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20) 광정원의 경우 사, 동지원사, 부사, 첨원사, 동첨원사, 도승지 등으로 구성됐는데, 동첨원사는 종3품으로 설정된 반면 그 다음 도승지는 (4품을 건너뛰어) 곧이 종5품으로 설정되었다. 사, 동지원사, 첨원사, 동첨원사, 판관으로 구성된 자정원 역시 됐는데 동첨원사는 정3품, 그리고 그 뒤의 판관은 4품이 아닌 정5품으로 설정됐음이 확인된다. 직제나 명칭상 동첨원사와 명확히 구분되던 승지(광정원)와 판관(자정원) 등에게 4품급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5품급 이하와 그 위 품급(4품) 간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의 발현이라 생각된다 『高麗史』 卷76, 志30 百官1 密直司, “(충렬왕)24年(1298), 忠宣改光政院刪定員吏: 使從一品; 同知院事正二品; 副使從二品; 僉院事正三品; 同僉院事從三品; 都承旨從五品; 承旨副承旨並從六品; 計議官正七品; 計議參軍正八品……”; 資政院, “忠烈王24年(1298) 忠宣新置之: 使秩從一品; 同知院事正二品; 僉院事從二品; 同僉院事正三品; 判官正五品; 計議官正七品; 計議參軍從八品. 尋罷之.”]

21) 『高麗史』 卷75, 志29 選舉 銓注 蔭絃, “忠宣王復位, 教曰, 宰臣直子, 許一名初受七品, 顯官, 致仕三品, 各許一子職事, 無子者, 甥姪·女一名許蒙, 文武四五品顯官解官, 各許一子蔭職.”

22) 『高麗史』 卷75, 志29 選舉 銓注 蔭絃, “忠烈王8年(1282) 5月, 文武致顯三品以上, 許蔭一子, 無子者, 甥姪, 若過房付籍者, 許一名初職, 先代宰臣·密直, 內外孫無名者, 亦戶許一名初職, 文武職事四品中事·典書·侍丞·諸曹正郎以上, 勿論解官試攝, 許蔭一子, 外員, 用前所任朝官, 降等許蔭.”

2) 2품계의 조정

충선왕 복위2년의 또 다른 중요 문산계 개편은 2품계에서 관찰된다. 그가 복위년에는 2품 문산계를 ‘광정대부(정2)-통헌대부(종2)’로 구성했다가, 복위2년에는 돌연 정2품 관계에 대광(상)과 정광(하)을 새로이 도입하고, 광정대부는 종2품(상)으로 내렸으며, 종2품(하) 관계로 봉익대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²³⁾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문산계만을 검토할 경우 도무지 잡히지 않으므로, 역시 해당 관계 보유자들의 동반 관직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광정대부(종2품 상)

우선 1310년 이후 광정대부(종2품 상으로 재조정된)를 받은 이들의 보유 관직을 살펴보자.

<표 7>을 보면, 충선왕대 이래 광정대부 보유자의 관직은 대부분 재신직으로, 그 중 3재신(종2품, 참지정사·참리·평리)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다음으로 2재신(정2품, 찬성사·중호)과 4재신(정당문학)도 종종 등장한다. 광정대부 보유자가 주로 ‘중급 재신’이었거나, ‘중급 재신에게 주로 광정대부가 제수’되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는 선왕 충렬왕대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인데, 충렬왕대의 광정대부는 고위(1·2), 중급(3·4), 하위(5) 재신에게 모두(고루) 제수됐기 때문이다(<표 8> 참조).

즉 충렬왕대의 광정대부는 모든 재신들이 보유할 수 있는 관계였던 반면, 충선왕대의 광정대부는 중급 재신이 주로 보유하는 관계로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었던 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렬왕대의 광정대부는 밀직에게는 거의 제수되지 않았지만, 충선왕대 이후에는 밀직으로서 광정대부를 보유한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어, 충선왕이 광정대부를 고위 밀직도 보유할 수 있는 관계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② 봉익대부(종2품 하)

다음으로, 1310년 이후 봉익대부(종2품 하)를 받은 이들의 보유 관직을 살펴보자.

<표 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충선왕대 이래의 봉익대부는 (비록 제1밀직 등의

23) 충선왕이 복위 2년 도입한 것은 사실 봉익대부 대신 ‘통헌대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통헌대부가 이후 충숙왕대에나 ‘봉익대부’로 바뀌게 되지만, 후술하도록 한다.

고위 밀직, 제3-4밀직 등의 중급 밀직과 함께 나올 때도 없진 않지만) 많은 경우 5밀직 이하의 ‘하위’ 밀직이 보유한 관계로 등장함이 주목된다. 이는 봉익대부가 하위 밀직은 물론 ‘중급’ 밀직의 보유 관계로도 종종 등장했던 충렬왕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다.

<표 10>에서도 확인되듯이 충렬왕대에는 3밀직과 4밀직, 그리고 충렬왕대에만 존재한 부지밀직(즉 4.5밀직) 등이 봉익대부를 보유한 사례들과, 5밀직과 7밀직 등 하위 밀직이 봉익대부를 보유한 사례들이 비슷한 빈도로 확인된다. 반면 충선왕대 이래의 봉익대부는 주로 하위 밀직들이 제수받은 관계로 그 위상이 특정되었던 듯한데, 3밀직이 봉익대부를 보유한 사례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4밀직, 5밀직, 7밀직이 받은 경우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충선왕은 광정대부와 봉익대부를 각기 ‘중급재신·고위밀직’과 ‘하위밀직’에게 수여할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양자를 각기 종2품(3재신, 2밀직) 및 정3품(5밀직 이하) 재상에게 부여하는 구도를 짰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 그가 정작 1308년 새 문산계의 설계 당시 광정대부를 정2품 관계, 그리고 (봉익대부의 전신인 썸인) 통헌대부를 종2품 관계로 설정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고려초부터 ‘종2품’의 위상을 지녔던 중급 재신 및 고위 밀직에게 주려 했던 광정대부를 ‘정2품’에 배치한 것은 충선왕 본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신과 밀직들이 여러 3품직(6부 상서, 어사대부)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정3품직’ 상서·어사대부 등이 결과적으로 ‘정2품’ 관계를 띄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을 것이다. 제도 개혁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충선왕은 1310년 개편에서는 정2품 관계를 불가피하게 새로이 대광과 정광으로 구성한 후, 그 중 대광을 1, 2재신에게 하사하고(<표 1> 참조),²⁴⁾ 광정대부는

24) 한편 ‘정광’은 하사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아마도 복위2년의 2품계 조정 결과 광정대부(종2품 상)는 종2품 재상(3재신 이하)에게 제수되고 신설된 대광(정2품 상)은 그 위 재신들(정2품 이상, 즉 2재신 이상)에게 제수되는 와중에 정작 정광은 사실상 설 곳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2품 2재신들에게 정2품(상)관계와(하)관계를 모두 부여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전자를 제수했을 테니 정광은 실상 허계로 남은 운명이었던 셈으로, 앞서 살펴본 종5품 조봉량과 비슷한 경우라 하겠다.

‘중2품’ 관계로 내려 2, 3재신 및 2밀직 등에게 수여했으며, 그 아래의 봉익대부는 자연히 하위 밀직들에게 제수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1308년 당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2년 후인 1310년에 교정했던 셈이다.

이상에서 충선왕의 두 차례에 걸친 문산계 개편을 살펴보았다. 1308년 출범한 새 문산계의 경우 대부계 축소(5품→4품) 및 정1품 신설 등의 두 특징이 주목되는데, 전자가 그간 고려의 관계 운용에 내재해 있던 독특한 현상(관계·관직 품급간 차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를 예방하려 한 조치였다면, 후자는 그에 수반된 조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2년 후인 1310년 2품군과 5품군에서 추가 조정을 단행한 것은, 1308년의 개편으로 불만이 있었을 5품군을 추가로 달래는 동시에 2품 관계 또한 재상(재신·밀직)들의 품급(중2, 정3)에 더 맞게 조정할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충선왕 문산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변화하였다. 충숙왕대에는 최고 문산계가 세분되고, 충렬왕대의 관계명들이 일부 부활하였다. 공민왕대에는 문산계의 운영방식이 달라지면서 문산계 자체의 권위도 다소 변동(하향)하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Ⅲ. 이후의 변화

1. 충숙왕대의 변화

『고려사』 백관지를 보면 충선왕 문산계에 대한 기록 뒤에 공민왕대의 문산계에 대한 기록이 바로 따라 나온다. 그런 탓에 양 왕대의 사이에 해당하는 충숙왕대에는 별다른 개편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묘지명 자료들에 따르면 충숙왕대에도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1) 정1품 관계 세분(‘벽상삼한’의 등장)

백관지에 따르면 충선왕은 정1품 관계를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삼중대광’ 하나만을 최고 관계로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공민왕이 5년(1356) 개편에서 문종대의 개부의 동삼사를 복구시키면서(도 문종대와는 달리) 그를 정1품(상)으로 설정한 후, 정1품

(하)로는 ‘의동삼사’를 두어 처음으로 정1품 관계에 상/하 구분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1품 내 상/하 구분은 11년 개편에서도 유지되었고, 명칭만 각기 ‘벽상삼한삼중대광’과 ‘삼중대광’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백관지의 기록만 놓고 보면 ‘최고 관계(정1품)의 상/하 구분’ 및 ‘벽상삼한 삼중대광’이라는 명칭 모두 공민왕대의 산물로 다가오는 바가 있다.

그러나 여러 묘지명 기록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보긴 어려울 듯하다. 벽상삼한 삼중대광이라는 용례가 이미 충숙왕대인 1320년대초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표 11> 참조). 이는 충선왕 재위기간에는 삼중대광만 운영되다가 충숙왕 즉위 후 어느 시점엔가 벽상삼한 삼중대광이 생겨나 일반 삼중대광과 공존하게 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민지나 김심, 김태현의 사례를 보면 ‘벽상삼한 삼중대광’과 ‘삼중대광’이 ‘동일한 존재’로서 후자는 전자의 ‘별칭’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공민왕5년 정1품 관계가 ‘상·하’로 구분된 것을 보면 고려의 문산계 운용상 양자가 분립할 필요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사람이 두 가지 모두 보유했던 경우는 해당자가 삼중대광 뿐 아니라 그 위의 ‘벽상삼한 삼중대광’까지도 보유했던 경우로서, 해당자가 보유했던 ‘삼중대광’은 ‘벽상삼한 삼중대광’을 받기 전 보유했던 관계이거나, 후자를 전자로 약칭한 경우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정1품 관계가 세분된 시점 역시, 기존의 공민왕대에서 충숙왕대로 올려 잡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판단된다.

다만 충숙왕이 이렇듯 최고 관계를 세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²⁵⁾

첫 번째 가능성은 ‘증직’이나 ‘치사직’ 수여대상자에게 부여할 관계가 필요해, 기존의 삼중대광보다 ‘조금 상위’ 벽상삼한 삼중대광 관계를 신설했을 경우이다. 정가신, 조인규, 홍세, 김태현의 경우가 그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고위 재신직 보유자 중 실직(實職)뿐 아니라 검교직, 수직(守職)의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에 구분을 두기 위해 삼중대광을 세분했을 경우이다. 예컨대 같은 1재신이라 하더라도 실직인 경우 벽상삼한 삼중대광을, 그리고 검교직이나 수직일 경우 삼중대광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그것으로, 김심, 박전지 등이 후자의 경우였을 수 있다.²⁶⁾

25) 벽상삼한은 충선왕 복위년 문산계에 잠시 등장하긴 하나, 복위2년 문산계에서는 혁파되므로, 충숙왕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마지막 가능성은 같은 1재신 내에서도 모종의 차등 대우가 필요했을 경우이다. 예컨대 정승(중찬)과 ‘첨의부 판사’의 경우 후자가 좀 더 높은 호칭이자 직위로 간주됐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후자를 보유한 이에겐 일반 삼중대광보다는 조금 더 높은 관계(예컨대 벽상삼한 삼중대광)가 필요했을 수 있으며, 민지가 그런 사례에 해당했을 수 있다.²⁷⁾

요컨대 같은 고위급 재신, 예컨대 1재신직 보유자라 하더라도 그 1재신직이 실직일 경우, 수직이나 검교직일 경우, 그리고 치사직이나 증직일 경우에 따라 관계의 차등 부여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최고 관계 또한 세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며, 그 결과 벽상삼한 삼중대광을 정1품(상) 관계로 신설해 필요한 경우 제수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충선왕이 복위연간 개편 당시 그런 필요성을 간과했던 셈이라면, 충숙왕이 1320년대 중반 일종의 제도보완책으로 벽상삼한 삼중대광 도입을 단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종2품(하) 관계 개명(‘통헌’→‘봉익’)

한편 이렇듯 제도개선 의도에서 단행된 조정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단행된 듯한 조정도 있다. 역시 충숙왕대 단행된 것으로 보이는 종2품 관계의 ‘개명’이 그것이다.

백관지에 따르면, 일찍이(1308년) 정2품이었던 광정대부가 1310년 개편 당시 종2품(상)으로 조정됐고, 1308년 광정대부의 짝으로서 종2품에 해당했던 통헌대부는 1310년을 끝으로 사라졌으며, 대신 광정대부의 새 짝으로서의 종2품(하) 관계로 (일찍이 충렬왕대 문산계에서 첫 등장한 바 있던) 봉익대부가 부활하였다. 이 기록대로라면 통헌대부는 충선왕 복위연간 초기인 1308년 및 1309년 단 2년간만 존재했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310년 이후 사라졌어야 할 통헌대부가 묘지명 기록에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며, 1320년대말까지 그 용례가 확인된다. 또 충선왕 복위2년(1310년) 이미

26) 다만 이렇게 본다면, 김심의 경우 1321년에는 벽상삼한 삼중대광이다가 1325년 이후 삼중대광으로 '강등'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27) 충선왕대 이래 국왕의 배려로 인해 밀직사조차도 삼중대광을 받는 상황에서(1311년 김심), 충숙왕대의 경우 재신에게는 '그보다 높은' 관계를 줘야 할 필요도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복구된 것으로 기록된 ‘봉익대부’는 묘지명 기록상으로는 한참 뒤인 1320년대 중반에나 등장하기 시작한다(<표 9> 참조). 게다가 14세기전반 통헌대부 보유자 및 봉익대부 보유자의 역임 관직들 역시 서로 비슷하다. 충숙왕대의 어느 시점에 통헌대부가 봉익대부로 개명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들이다.

<표 12>에서도 확인되듯이, 통헌대부는 1320년대 중·후반까지 관료들에게 실제로 수여되었다. 따라서 통헌대부가 1310년 개편 당시 폐지되었다는 백관지의 기록은 오류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후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통헌대부의 수여는 1320년대말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봉익대부’가 묘지명 자료에 빈번하게 출현하는데,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그 출현빈도가 공교롭게도 1320년대말 이래 급격하게 높아진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통헌대부가 봉익대부로 개명되거나, 봉익대부가 통헌대부를 대신하게 된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그를 위해서는 1320년대 후반까지의 통헌대부와 1320년대말 이래의 봉익대부가 서로 동일한 위상(성격)을 지닌 관계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관계를 보유했던 관료들의 동시기 역임 관직을 살펴보면, 봉익대부 보유자들이 역임한 관직의 종류와 품급이 통헌대부 보유자들이 역임한 관직들의 그것과 거의 비슷했음이 확인된다.

통헌대부의 경우 <표 12>에 따르면 재신의 문산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밀직의 경우 5밀직과 자주 함께 등장하며, 4·3밀직이 보유하던 문산계로도 가끔 등장한다(6부 상서, 어사대부와도 곧잘 함께 등장). 그 위 관계였던 광정대부에 대응되던 직들, 예컨대 중급 재신 및 고위 밀직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재상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충선왕대 이래 14세기전반의 봉익대부 역시, 앞서 <표 9>에서 살펴봤듯이 재신의 문산계로는 등장하지 않으며, 4·5밀직의 문산계로 자주 등장하는 동시에 6부 상서, 어사대부와도 자주 함께 등장한다. 즉 통헌대부와 봉익대부의 경우 동반관직의 종류와 품급이 거의 동일했던 셈으로, 1320년대후반까지의 통헌대부가 이후 1320년대말부터는 봉익대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충선왕 문산계의 종2품(하) 관계는 1320년대 후반까지는 통헌대부, 그리고 이후부터는 봉익대부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충숙왕은 왜 굳이 충선왕대의 ‘통헌대부’라는 명칭을 없애고 충렬왕대 문산계에서 처음 등장했던 ‘봉익대부’라는 명칭을 부활시켰으며, 그 조치를 하필 1320년대 후반 단행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현의 묘지명에 등장하는 “1327년 충렬왕대의 관제를 복구하였다”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충숙왕이 충선왕대의 관제를 폐지하고 충렬왕대 관제를 되살렸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헌부’를 비롯한 충선왕대의 여러 관부들이 1327년 이후에는 ‘감찰사’ 등 충렬왕대의 부서명으로 등장함이 확인된다. 심왕옹립운동 세력과의 오랜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327년의 상황에서, 심왕과 다수를 측근으로 거느렸던 부왕 충선왕대의 유산 일부를 고려 정부의 운용에서 지워 내기 위한 선택으로 짐작된다.²⁸⁾

다만 충숙왕에게는 충선왕의 유제(遺制)를 배제한다는 상징성이 필요했을 뿐, 국정 자체를 충렬왕대의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충숙왕대 문산계의 변화의 범위에서도 확인되는데, 전술한 벽상삼한 삼중대광의 도입이나 여기서 논한 통헌대부의 봉익대부로의 개명 외에는 충선왕대 문산계 상의 관계 대부분이, 즉 충렬왕이 아닌 충선왕대의 제도가 충숙왕대에도 유지되었다. 결국 충숙왕은 ‘광정대부-통헌대부’라는 충선왕대의 종2품 조합을 ‘광정대부-봉익대부’라는 충렬왕대의 조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만족한 셈이라 하겠으며,²⁹⁾ 그렇게 부활된 봉익대부가 이후 공민왕11년·21년 문산계에도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비록 백관지에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충숙왕대에도 문산계는 일부 개편되었다. 충선왕대의 개편에서 간과된 일부 문제를 시정해야 할 실용적 필요와, 관제 운용에 있어 일종의 선연적 개편이 요망되던 충숙왕 나름의 정치적 필요가 작동한 결과라 할 것이다.

2. 공민왕대의 변화

충선왕대 문산계는 공민왕 재위기간 동안 두 차례(공민왕5년, 공민왕18년) 폐지되고 새로운 문산계로 대체되었다.³⁰⁾ 그 결과 공민왕5년 이래 10년까지, 그리고 18년이

28) 이강한, 「고려 충숙왕대 인사정책 연구: 재추의 관직점임 양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29) 광정대부라는 명칭 자체가 충렬왕대 문산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었으므로, 충숙왕도 종2품(상) 광정대부의 짝이 될 종2품(하)의 이름은 통헌대부보다 봉익대부가 적절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30) 충선왕 문산계 대신 도입된 공민왕5년·18년 문산계의 경우, 문종대, 충선왕즉위년, 충선왕복위년 및 중국 금·원대 문산계의 여러 요소들을 무원칙적으로 섞어 놓은 매우 ‘난삽한’ 모습을 보이는데,

래 20년까지 두 차례, 합하여 총 9-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운영되지 못했다. 다만 그 외의 기간에는 운영됐으니, 공민왕11년 부활하여 동왕 17년까지 운영됐고, 공민왕21년에도 다시 복구되었다. 공민왕대만을 놓고 보더라도, 충선왕 문산계가 운영된 시기가 그렇지 못했던 시기보다 확실히 길다.

아울러 공민왕은 조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산계를 운영했던 것 같다. 고위 관계 보유자들이 역임한 관직들의 품급이 전에 비해 ‘낮고’, 중급 관계 보유자들이 보유한 관직의 권한과 직능도 전에 비해 ‘약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동반관직들의 품급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고, 6부나 어사대의 관직이 아닌 중하위 부서들의 수장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 고위 관계(1-2품)의 위상 저하

우선 대부계 상의 고위 관계들을 살펴보자. ‘충선왕대 이래’와 ‘공민왕대’를 배경으로 동일 관계 또는 동일 품급 관계를 보유한 자들의 ‘재상으로서의 순위’를 비교하면, 해당 관계의 위상, 더 나아가 해당 관계를 보유한 관료(재상)의 위상이 ‘낮아졌음’이 확인된다.

① 종1품 관계

충선왕 복위년 문산계의 ‘종1품’ 관계에 해당하는 중대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1>) 14세기중엽까지는 주로 재2재신인 찬성사(정2품)가 보유한 관계로 가장 자주 등장한다. 그에 비해 공민왕5년 문산계의 ‘종1품’ 관계에 해당하는 금자광록대부는 제3재신, 4재신(종2품)이 보유한 관계로 등장한다(<표 16>). 충선왕 복위년에 비해, 종1품 관계를 보유한 관료의 동반 관직이 품급상 하강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자연히 종1품 관계의 위상도 이전보다는 낮아지고, 그에 대한 세간의 인식도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충선왕의 문산계를 부활시킨 공민왕11년 문산계에서는 문산계의 종1품 관계인 중대광이 다시금 2재신이 보유한 관계로 등장한다. 그러나 6부의 ‘판사’가 주로 보유하던 충선왕대 문산계의 중대광과 달리(<표 1> 참조), 공민왕11년의 중대광은

그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도록 하겠다.

6부의 ‘상서’가 그 대응직으로 등장한다(<표 13> 참조). 공민왕대 중대광의 위상이 충선왕대 중대광의 그것에 비해 다소 낮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지점이다.

그런 변화는 충선왕대 문산계가 다시 부활한 공민왕21년 문산계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중대광이 ‘3재신’ 및 심지어 ‘밀직’들이 보유한 관계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2재신’들이 중대광을 보유하던 충선왕대에 비해 공민왕대 중대광의 위상은 매우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공민왕대의 경우 종1품 관계의 위상이 충선왕대에 비해 ‘하향’했음을 보여준다.

즉 충선왕대 이래 문산계의 종1품 관계는 주로 정2품 2재신 및 6부 판사 등이 보유하던 것이었음에 비해, 공민왕대(특히 말)에는 3재신 이하의 재신 및 밀직, 6부 상서 등이 보유하던 것으로 변질됐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다른 고위 관계들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② 정2품 관계

충선왕 복위2년 문산계의 정2품(상)인 대광과, 공민왕11년 문산계의 정2품 관계인 광정대부가 그런 경우다. 충선왕 복위2년 대광의 경우, <표 1>에 따르면 1재신(종1), 2재신(정2), 또는 6부 판사, 삼사사 등과 대응된다. 반면 공민왕11년의 광정대부는 주로 제3·4·5재신(종2) 등 중·하위 재신들이 갖는 문산계로 등장한다(<표 14> 참조). 관계상으로는 같은 품급의 관계임에도, 동반하는 재상직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③ 유사 품급을 가진 관계 간 비교

마지막으로 충선왕 복위년간과 공민왕대 문산계 중 품급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상이 비슷해 서로 견주어 볼 만한 관계들을 비교해 보자. 충선왕 복위2년 문산계의 광정대부(종2품 상)와 공민왕11년 문산계의 광정대부(정2품)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공민왕11년 광정대부의 품급(정2)은 충선왕 복위2년 광정대부의 품급(종2상)보다 다소 높다. 명칭은 동일하지만, 후자가 그냥 종2품이 아니고 종2품(상)임을 감안하면 양자 간에 1품 또는 그 미만의 차이가 인정된다.³¹⁾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동반 관직에

31) 종2품과 정2품 간의 간격을 1품이라 할 때, 종2품(상)은 일반 종2품에 비해 좀 더 높은 관계였을

서 추출되는 양자의 상하관계는 그와 정반대다. 공민왕11년 광정대부를 받은 이들의 관직 품급이, 충선왕 복위2년 광정대부를 받은 이들의 관직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충선왕 복위2년의 광정대부는 제3재신의 보유 관계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제4재신, 2재신 및 2밀직이 보유한 관계로도 더러 등장하였다(<표 7> 참조). 중급 재신 및 고위 밀직이 받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공민왕11년의 광정대부는 제3~5재신이 보유했던 관계로 등장하며, 21년 문산계의 광정대부도 그와 동일하였다(<표 14> 참조). 즉 공민왕대의 광정대부는 중·하위 재신들이 받는 관계였던 셈으로, 관계상의 품급은 공민왕대의 광정대부가 더 높았지만, 동반 재상직의 수위로 본 위상으로는 충선왕대 광정대부가 더 높았던 셈이다. 앞서 거론한 (1), (2)의 경우에 비해 더욱 노골적으로 공민왕대 고위 관계들의 위상이 충선왕 복위년간에 비해 낮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은 충선왕 복위2년의 통헌대부(충숙왕대 봉익대부, 종2품 하)와 공민왕 11년 봉익대부(종2품) 간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양자 모두 종2품급이지만, 공민왕11년의 봉익대부는 상/하 구분이 없는 ‘단품(單品)’이라는 점에서 충선왕대 통헌대부나 충숙왕대 봉익대부에 비해 다소 높은 관계임에도, 당사자들의 역임 관직을 보면 그와는 다른 정황이 관찰된다.

충선왕 복위년과 충숙왕 전반의 통헌대부는 대체로 5밀직이 보유한 관계 또는 4밀직·3밀직이 더러 보유한 관계로 등장하고(<표 12> 참조), 충숙왕대 후반 이래의 봉익대부 역시 4밀직, 4.5밀직(부지밀직), 5밀직과 자주 함께 등장한다(<표 9> 참조). 반면 공민왕11년 문산계의 봉익대부는 비록 사례 수가 적긴 하나 6부 상서, 어사대부와 함께 등장할 뿐, 보유자가 재신, 밀직이었던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표 15> 참조). 물론 공민왕21년 문산계의 봉익대부는 다시금 4~5밀직과 더러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충선왕 복위년간 이래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공민왕대 봉익대부가 충선·충숙왕대의 봉익·통헌대부에 비해 ‘품급은 높으며 위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았던’ 추세 자체는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공민왕대의 고위 관계와 충선·충숙왕대의 고위 관계를 비교한 위 세 가지 경우에서, 품급이 동일한 경우 전자가 동반한 재상직이 후자가 동반한 재상직에 비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언급이다.

그 품급이나 순위가 낮고, 심지어 전자가 후자보다 품급이 약간 높은 경우에도 동반 재상직의 순위는 여전히 전자가 후자에 비해 낮은 양상이 관찰된다. 이는 공민왕대 고위 관계의 위상 자체가 충선왕대 이래 동일 관계의 그것에 비해 낮았을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공민왕대 문산계의 권위 자체가 충선왕대 이래보다 하락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돌이켜 보면, 이는 이미 공민왕의 초기 문산계 운영에서 예고된 바가 있다. 공민왕5년 문산계의 금자광록대부(종1상), 은청광록대부(정2상), 은청영록대부(정2하)가 그를 잘 보여준다(<표16> 참조). 공민왕대초의 금자광록대부(종1품 상)는 4재신(종2), 어사대부(정3) 등에게 제수되었고, 은청광록대부(정2품 상)는 2밀직(종2), 6부(3품) 상서 등에게 제수됐으며, 은청영록대부(정2품 하)도 6부 상서에 제수되었다. 이전 문종 문산계에서는 금자광록대부와 은청광록대부가 각기 ‘종2품’과 ‘정3품’에 해당하였고 조정의 최고위 재신이었던 1,2재신(종1, 정2)들이 그를 받곤 했지만, 공민왕대에는 문종대에 비해 각기 ‘종1품’과 ‘정2품’으로 격상된 금자광록대부와 은청광록대부가, 문종대와는 반대로 하위 재신은 물론 밀직에게까지 수여됐던 것이다. 공민왕대의 이런 양상은 충선왕대의 정1품 삼중대광이 1재신(종1), 종1품 중대광이 1재신(종1)과 2재신(정2), 그리고 정2품(상) 대광이 1재신(종1)과 2재신(정2)에게 부여된 것과도 다른 것으로, 한마디로 공민왕대초부터 최고위 관계들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셈이라 할 수 있다.

공민왕이 최고위 관계들을 이렇게 운영한 이유는 미상이다. 더 많은 관료들에게 최상위 문산계를 부여하려 한 결과일 수 있지만, 현전 사례가 많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것이 최고위 관계의 위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최고위 관계로 관료들의 환심을 사거나 사기를 북돋우려다, 오히려 그 관계들의 권위에 손상을 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2) 중급 관계(3-4품) 보유자의 권능 저하

한편 공민왕대 3-4품 관계에서는 또 다른 경향이 추출된다. 앞서 살펴본 공민왕대(14세기 중·후반)의 최고위 관계들은 충선왕대(및 14세기전반)에 비해 그 위상이 낮아졌음이 확인되는 경우지만, 공민왕대 문산계의 ‘그 아래’ 관계들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보유 관직의 품급만 놓고 보면 충선왕대에 비해 그 위상이 낮아졌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충선왕대 이래 중간급 관계 보유자가 역임 중인 관직의 품급이 정작 관계의 품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견되는 것과 달리, 공민왕대에는 관계-관직의 품급이 서로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공민왕대의 운용이 충선왕대의 원칙에 더 충실했던 모습도 관찰된다.

다만 해당 관계 보유자들의 역임 관직이 [충선왕대 이래처럼] 6부, 어사대 등 핵심 부서의 관직들로 나타나기보다는, 주로 실무부서들의 수장 또는 부수장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³²⁾ 6부나 어사대의 권한·직능(‘권능’)이 다른 실무부서들에 비해 강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³³⁾ 상기한 양상은 공민왕대 대부계 중간 관계 보유자들의 권능이 충선왕대 동일 관계 보유자들에 비해 ‘약해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4품 관계들의 경우, 1-2품 관계들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공민왕대 문산계의 위상이 충선왕대의 그것에 비해 ‘악화’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3품(상)에 해당하는 정순대부가 좋은 사례다.

충선왕대 문산계의 정순대부는 비재신, 비밀직과 더러 함께 등장하며, 6부의 상서나 지사, 삼사의 지사, 어사대의 2인자(집의)와 간혹 함께 등장한다(<표 5> 참조). 반면 공민왕대의 정순대부는 그런 사례 대신, 여러 실무부서의 장들이 가진 문산계로만 등장한다(<표 17> 참조). 6부 지사는 3품과 4품 사이, 그리고 어사대 집의는 충선왕대 이후 종3품에 해당했음을 감안하면, 정3품(상)이었던 정순대부 보유자가 그를 역임하는 상황은 사실 충선왕이 천명한 관계-관직 품급의 일치화 방침과는 어긋나는 일이었다. 반면 공민왕대 정순대부 보유자들의 경우 <표 17>에서 확인되듯이 관직으로서의 실무부서 판사직들이 모두 정3품직이어서, 충선왕대 이래의 방침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민왕대 정순대부의 위상이 오히려 충선왕대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여지도 결과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한편으로, 공민왕대 정순대부 보유자들에게서는 (정순대부 보유자가) 첨의부·밀직사의 비재신과 비밀직, 6부의 상서나 지사, 어사대나 삼사의 2인자 급 지위

32) ‘핵심부서’, ‘실무부서’ 등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구분이 아닌 필자의 임의적 구분에 불과하나, 각 부서들이 조정의 의사결정에서 점하는 비중을 감안해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33) 같은 정3품이지만 시·감의 판사직은 재신직을 띠지 못했고 추신(밀직) 직을 띠는 빈도도 낮아, 재추가 될 수 있었던 6부 상서와는 달랐던 경우로 간주된다(이정훈, 앞의 논문 『역사와현실』 176).

를 역임했던 이전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정3품급 비재신과 비밀직은 물론이고 6부의 상서 역시 일반 실무부서의 장에 비해서는 그 위상이 현저히 높았던 존재이므로, 자연히 그 권능도 더욱 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실무부서의 장만을 역임했던 공민왕대 정순대부 보유자들의 권능은, 충선왕대 이래 정순대부 보유자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민왕대 정순대부 보유자들이 역임한 관직의 품급(정3) 자체는 충선왕대 정순대부 보유자들의 역임 관직 품급(예: 6부 지사, 3~4품)에 비해 더러 높은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능 차원의 위상은 오히려 낮았을 수 있는 것이다.³⁴⁾

정순대부의 경우에서 확인된 이런 양상은 그 아래 관계들에서도 확인된다. 봉순·증정·중현대부 등이 그를 잘 보여준다(<표 18> 참조).

봉순대부(정3품 하)의 경우 충선왕대 이래 14세기전반에는 정3품이 아닌 어사대 집의(종3품), 6부 지사(3.5품) 등 종3품, 3.5품 관직들과 함께 등장하지만(<표 5> 참조), 공민왕대에는 (한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위시, 사복시, 전교시, 사재시의 수장 등 정3품직에 해당하는 일반 실무부서 수장직들의 보유 관계로만 등장한다. 충선왕대의 경우 봉순대부 보유자들이 핵심 권력부서의 직을 역임했던 데 비해, 공민왕대의 경우에는 봉순대부 보유자들이 비록 봉순대부의 품급과 정확히 일치하는 품급의 관직을 역임했는지 핵심 권력부서의 직을 역임하는 경우는 적었던 셈이다. 공민왕대 중간급 관계 보유자들의 권능이 충선왕대 이래 봉순대부 보유자들에 비해 다소 낮아졌음을 봉순대부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종3품 관계인 증정대부와 중현대부도 비슷한 경우이다. 충선왕대 이래의 증정대부(종3품 상)는 어사대부의 집의(종3품), 장령(종4품), 6부의 지사와 시랑(종4품), 그리고 삼사윤 등 3품직자 뿐 아니라 4품직자에도 수여됐는데(<표 5> 참조), 이는 관계와 관직 품급 간 차이가 정3품과 종3품, 3품과 3.5품의 차이 정도이던 위 정순대부, 봉순대부의 경우보다도 더 큰 충선왕대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다. 반면 공민왕대의 증정대부는 정확히 종3품급 여러 실무 부서들의 장과 대응되어 관직과의 품급 일치에

34) 물론 여러 부서의 수장직을 역임하던 이들이 이미 6부, 어사대, 삼사의 관직을 역임했을 수도 있고, 기사의 시점에서 이미 재신, 밀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런 이들의 관직을 기록함에 있어 여타 부서의 수장직보다는 재신, 밀직, 6부 직 등을 언급하지 않았을 까 싶으며, 그런 점에서 그들의 경우 아직 중요 권력직에는 이르지 못했던 인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있어서는 충선왕대보다도 철저했지만, 공민왕대 중정대부 보유자들이 [충선왕대 이래의 중정대부 보유자들이 역임했던] 6부, 어사대 관직을 보유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삼사운 정도와만 대응될 따름이다). 종3품(하) 중현대부도 마찬가지로, 충선왕대 이래의 중현대부 보유자들은 6부의 지사, 시랑, 낭중 및 어사대 집의 등 종3품, 3.5품, 4품직을 보유했지만, 공민왕대의 중현대부 보유자들이 역임한 관직으로는 종3품급의 실무 부서 수장들만 관찰된다. 중정대부와 중현대부 모두 충선왕대에서 공민왕대로 시간이 흐르며 상대적으로 낮은 권능을 가진 관료에게만 하사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³⁵⁾

이상에서 3품급(대부계의 중급) 관계 보유자들의 공민왕대 존재 양상을 충선왕대 이래 14세기 전반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다. 공민왕대 접어들어 대부계의 중간급 관계를 보유한 관료들은 이전과 달리 관계의 품급과 정확히 일치하는 관직을 역임하게 됐지만, 그 관직들이 6부나 어사대 등의 관직이 아닌 실무부서의 장일 따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관계-관직 품급 일치화 방침의 구현이 미흡했던 부분이 해소된 측면은 있었지만, 동일 관계를 보유한 자들의 권능이 약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산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민왕대의 고위 관계 운용이 수여후보자들을 위무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문산계의 권위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였던 것과 흡사한 경우라 하겠다. 이렇듯 공민왕대 20여년간 고위 관계들은 전에 비해 더 낮은 재상들에게 제수되고, 중급 관계들은 전과 달리 실무부서 장들에만 제수된 결과, 충선왕대 이래 유지돼 온 14세기전반 고려 후기 문산계의 권위가 일정부분 약화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충선왕대 문산계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충선왕은 고려 전·중기 문산계의 오래된 특징인 관직-관계 품급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양자 간의 품급차가 줄어든 충렬왕대 이래의 추세를 활용하

35) 한편 정4품 봉상대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표 6〉 참조), 그 연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고, 관계가 정1품부터 시작하는 원제국 문산계의 사례도 참고하여, 문산계를 정1품에서 시작시키는 동시에 대부계를 5품까지에서 4품까지로 축소시키는 조치를 전격 시행하였다. 원제국 제도의 외양을 참칭(僭稱)하는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내정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했던 셈이다. 다만 워낙 파격적인 개편이었기에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었고, 이에 재상의 품급에 맞춰 고위 관계의 품급을 조정하고 5품 관직자들도 달래기 위해, 1310년 2품계 및 5품계를 조정하였다.

충선왕대 문산계는 이후 14세기말까지 유지되지만, 일부 변동도 없지 않았다. 충숙왕은 정1품 관계가 세분되지 않아 위상이 다양했던 최고위 관직자들을 서로 차등대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벽상삼한 삼중대광을 새로이 도입했고, 심왕용립 세력과의 갈등 속에 충선왕대의 통천대부를 충렬왕대의 봉익대부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반면 공민왕은 고위 관계 수여자층을 위무하고 관계-관직 품급 일치화 방침도 강화하기 위해 고급 관계는 전에 비해 넓은 대상층(중·하위 재상들)에게 부여하고 중급 관계 보유자들에게는 정3품 실무부서 직들을 제수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문산계 대부계의 위상 자체가 전에 비해 낮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14세기초 충선왕의 문산계 개편은, 고려 내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전향적 원제(元制) 수용이나 과감한 고려 구제(舊制) 탈피도 서슴치 않았던 충선왕대 제도 개혁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충선왕 문산계는 14세기 전·후반을 거치는 동안 비록 일부 부분에서는 보완과 위상저하를 겪었으며 100년 가까이 운영되었다. 14세기 고려의 제도 개편은 종종 왕조 멸망기의 산물로만 간주돼 무시되곤 했지만, 충선왕대의 여러 다른 개편처럼 그의 문산계 역시 그 생명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14세기의 여러 제도적 정비 상황들을 고려 전·중기와는 또 달랐던 후기 제도사의 일부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공민왕대 이후 고려말 문산계의 추이와 조선전기 문산계의 문제는 차후 별고에서 살피도록 한다.

참고문헌

- 박용운, 『고려시대 관제·관직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이강한, 「고려 충선왕의 국정과 ‘舊制’ 복원」,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2008
- _____,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元의 영향」, 『한국문화』 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_____, 「공민왕대 관제개편의 내용 및 의미」, 『역사학보』 201, 역사학회, 2009
- _____, 「고려후기 ‘충렬왕대 문산계(文散階)’의 구조와 운용」, 『진단학보』 116, 진단학회, 2012
- _____, 「고려 충렬-충정왕대의 밀직-재신 간 전직 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76, 고려사학회, 2019
- _____, 「고려 충선왕대의 관직운용 양상 연구-충렬왕대와의 비교 검토」, 『역사와현실』 113, 한국역사연구회, 2019
- _____, 「고려 충숙왕대 인사정책 연구: 재추의 관직겸임 양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 _____, 「공민왕대 인사정책 연구 -재위전반기(~1365), 재추의 겸직 및 전직 양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 한국중세사학회, 2020
- 이정훈, 「고려전기 문산계 운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150, 국학연구원, 2010
- _____, 「고려전기 문산계의 실제 운영-대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76, 한국역사연구회, 2010
- _____, 「고려전기 문산계의 실제 운영-개부의동삼사와 특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4, 국학연구원, 2011
- _____, 「충선왕대 관제개혁과 관청간의 통속(統屬)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 _____, 「원간섭기 상의(商議) 관직의 설치와 변화」,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 _____, 「충렬왕대 문산계의 복원과 운영-대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 이진한, 「고려전기 치사제의 운영과 관인의 인년치사」, 『민족문화연구』 58, 민족문화연구원, 2013

Renovation of the Goryeo Munsan-gye System during King Chungseon's Reign, and Changes that Followed

Lee, Kang-han

During his reign, King Chungseon of Goryeo renovated the Goryeo government's Munsan-gye system twice, first in 1298, and then in 1308. In this article, the latter version is examined. This system of Chungsoen is known for all the new names given to the individual ranks, but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Goryeo system was the Daebu portion, as in Chungseon's system it began at Jeong-1 rank(unlike the previous Jong-1 rank) and ended in the 4th (unlike the previous 5th). With this new Munsan-gye system, Chungseon was able to remedy an age-old problem that plagued the previous system, in which the Munsan-gye rank awarded to an individual official did not match the rank of the governmental post that individual was in possession of at the time. Of course, there were some glitches in Chungseon's new design as well, so two years later in 1310, he rectified such problems by modifying the 2nd and 5th ranks. Then later, his son King Chung Suk divided the Jeong-1 rank, while also renaming Chungseon's Tongheon Daebu to Bongik Daebu (from King Chung'ryeol's days), and even later, his grandson King Gongmin seems to have operated the system in a manner which led to the overall stature of the Chungseon-designed Munsan-gye system deteriorating a little bit. Nonetheless, this system developed by Chungseon was another example of his efforts in the early 14th century which continued with the intention of overhauling many aspects of the Goryeo syste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ystem was maintained for nearly a century, which was not that short considering the previous system was only operated for less than two centuries, I think the system itself deserves more attention than it had from researchers in the past.

Key Words : King Chungseon, Munsan-gye system, Daebu-gye portion, post, status, rank, King Chung Suk, King Gongmin

[범례]

- 1) 동일인의 기록도 보유 관직이나 시점이 다른 경우 달리 수록하였다.
- 2) 관직의 품급은 『고려사』 백관지 및 세가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3) 본고에서 인용한 묘지명들은 모두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에 수록된 것이며, 글자 판독, 묘지명 제작연대 모두 김용선의 입장을 따랐다.
- 4) 본고에서는 다섯 재신(宰臣)의 고려후기 후신인 정승(중찬), 찬성사, 참리(평리), 참문학사, 지도첨의사(지첨의부사)를 편의상 각기 ‘제1·2·3·4·5재신’으로, 그리고 일곱 추밀(樞密)의 경우 그 고려후기 후신인 판밀직사·밀직사·지밀직사·동지밀직사·밀직부사·첨서밀직사·직학사를 각기 ‘제1·2·3·4·5·6·7밀직’으로 지칭했음을 일러둔다.

〈표 1〉 중대광 및 대광 보유 사례 (14세기전반까지)

중대광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박전지	1309	중대광	첨의찬성사 판선부사 ³⁶⁾	2재(정2) 6부 판사	본인
권부	1312	중대광	첨의찬성사 판총부사 ³⁷⁾	2재(정2) 6부 판사	권단(부친)
민지	1316	중대광	검교첨의정승 ³⁸⁾	1재(종1)	원관(찬)
박전지	1319	중대광	검교첨의정승 ³⁹⁾	1재(종1)	본인
오잠	1319(20)	중대광	첨의찬성사 ⁴⁰⁾	2재(정2)	본인
민종유	1321	중대광	첨의찬성사 판총부사 ⁴¹⁾ (도첨의찬성사 판총부사 ⁴²⁾)	2재(정2) 6부 판사	본인 민적(아들) 민사평(손자)
오잠	1321	중대광	첨의찬성사 판총부사 ⁴³⁾	2재(정2) 6부 판사	본인
김순	1321	중대광	판삼사 ⁴⁴⁾	삼사 판사	본인
김태현	1321	중대광	첨의평리 판삼사 ⁴⁵⁾	3재(종2) 삼사 판사	본인

원충	1324	중대광	첨의찬성사 판민부사 ⁴⁶⁾	2재(정2) 6부 판사	본인
윤신걸	1324	중대광	삼사사 ⁴⁷⁾	삼사 사	본인
이설	1326	중대광	첨의찬성사 ⁴⁸⁾	2재(정2)	이덕손처유씨 (모친)
김원상	1326	중대광	삼사사 ⁴⁹⁾	삼사 사	민지(장인)
민적	1327	중대광	동지밀직사사 ⁵⁰⁾	4밀(종2)	본인
최성지	1330이전	중대광	첨의찬성사 ⁵¹⁾	2재(정2)	본인
민상정	1337	중대광	첨의찬성사 판판도사사 ⁵²⁾	2재(정2) 6부 판사	민지처신씨 (모친)
김원상	1337	중대광	판삼사사 ⁵³⁾	삼사 판사	민지처신씨 (장모)
홍빈	1337~39	중대광	도첨의찬성사, 판군부사 ⁵⁴⁾	2재(정2) 6부 판사	본인
이조년	1344이전	중대광	정당문학 ⁵⁵⁾	4재(종2)	본인
김륜	1348이전	중대광	검교첨의평리, 삼사좌우사, 도첨의찬성사 판판도사사 ⁵⁶⁾	3재(종2), 2재(정2) 6부 판사, 삼사 사	본인
조위	1349	중대광	첨의찬성사 ⁵⁷⁾	2재(정2)	본인
대광					
김심	1309, 1310	대광	첨의중찬, 도첨의찬성사 판민부사 ⁵⁸⁾	1재(종1), 2재(정2) 6부 판사	본인
홍용	1316 (1339)	대광	삼사사 ⁵⁹⁾	삼사 사	홍규(부친) 홍규처김씨(모친)
조연수	1320	대광	문하시랑평장사 ⁶⁰⁾	2재(정2)	본인
윤신걸	1324	대광	삼사사 ⁶¹⁾	삼사 사	본인
이제현	1326	대광	삼사사 ⁶²⁾	삼사 사	민지(찬)

- 36)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己酉(1309) 六月, 重大匡 僉議贊成事 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 判選部事 致仕.” 그는 처 최씨의 묘지명(1316년줄)에도 중대광-평장사로 등장한다(“重大匡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 判吏部事 致仕 杏山居士朴全之妻”).
- 37) 『권단(權坦) 묘지명(1312)』 “一男曰溥今爲 重大匡 僉議贊成事 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 判摠部事.”
- 38) 『원관(元瓘) 묘지명(1316)』 “重大匡 [檢]校僉議政丞 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 驪興君 閱漬撰.”
- 39)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己酉(1309) 六月, 重大匡 僉議贊成事 …… 延祐己未(1319) 四月, 爲推誠贊化功臣藝文館大提 檢校僉議政丞 監春秋館事延興君.”

- 40) 『오잠(吳潛) 묘지명(1336)』 “(延祐)六年(1319) 二月, 加重大匡龜城君. 七年(1320) 十一月, 加藝文館大提學 重大匡僉議贊成事 知製教知春秋館事上護軍.”
- 41) 『민중유(閔宗儒) 묘지명(1324)』 “今王己未(1319), 授重大匡 封復興君, 至治辛酉(1321), 省非王氏而君者隨例去復興, 爵復以僉議贊成事 上護軍 判愬部事致仕.”; 『민적(閔頤) 묘지명(1336)』 “考諱宗儒, 故重大匡僉議贊成事致仕, 諡忠順公.”
- 42)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祖諱宗儒, 重大匡都僉議贊成事 上將軍判愬部事致仕, 諡忠順.”
- 43) 『오잠(吳潛) 묘지명(1336)』 “至治元年(1321) 正月, 加重大匡 僉議贊成事 右文館事提學監春秋館事 判愬部事 龜城君.”
- 44) 『김순(金恂) 묘지명(1321)』 “重大匡 判三司事 寶文閣大提學 上護軍.”
- 45) 『김태현(金台鉉) 묘지명(1330)』 “辛酉(1321), 起爲僉議評理, 尋判三司, 階重大匡.”
- 46) 『원충(元忠) 묘지명(1337)』 “泰定元年(1324), 太尉王得西迴, 王復爵授公推誠佐理功臣 重大匡 僉議贊成事 判民部事 上護軍.”
- 47) 『윤신길(尹莘傑) 묘지명(1337)』 “泰定元年(1324), 拜大匡 三司使 進賢館大提學上護軍冬封杞城君, 階陞重大匡.”
- 48) 『이덕손(李德孫) 처 유씨(庾氏) 묘지명(1326)』 “男日俛, 今重大匡 僉議贊成事 上護軍.”
- 49) 『민지(閔漬) 묘지명(1326)』 “一適 重大匡 三司使 藝文館大提學上護軍金元祥.”
- 50) 『민적(閔頤) 묘지명(1336)』 “入密直爲副使, 改民部典書大司憲, 皆同知密直司事. 丁卯(1327), 封驪興君, 階重大匡.” 14세기 전반 중대광이 통상 1,2재신의 보유 관계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민적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 51) 『최성지(崔誠之) 묘지명(1330)』 “立武宗皇帝公常居左右贊襄之人無知者由朝顯摠郎, 六遷爲三司左使 皆奉翊. 尋轉僉議評理 三司使, 僉議贊成事, 階重大匡.”
- 52) 『민지(閔漬) 처 신씨(申氏) 묘지명(1337)』 “長日祥正, 重大匡 僉議贊成事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 判版圖司事上護軍.”
- 53) 『민지(閔漬) 처 신씨(申氏) 묘지명(1337)』 “次女適重大匡 前判三司事進賢館大提學金元祥.”
- 54) 『홍빈(洪彬) 묘지명(1354)』 “後至元丁丑(1337)也 …… 遂拜都僉議贊成事, 階重大匡. 帶上護軍俄而進判軍簿司事人之稱之則曰二相. 己卯(1339) 春三月 ……”
- 55) 『이조년(李兆年) 묘지명(1344)』 “是階至重大匡, 官至政堂文學 上護軍館職至進賢大提學.” 14세기 전반 중대광이 통상 1,2재신의 보유 관계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조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 56) 『김륜(金倫) 묘지명(1348)』 “加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司左右使, 封彥陽君階重大匡, 號推誠贊理功臣, 又加都僉議贊成事判版圖司事.”
- 57) 『조위(趙瑋) 묘지명(1349)』 “高麗國重大匡 僉議贊成事上護軍平壤君趙莊景公墓誌銘.”
- 58) 『김심(金深) 묘지명(1339)』 “至大元年(1308) 戊申, 宣授鎮國上將軍高麗兵馬都元帥 二年(1309) 爲壁上三韓大匡僉議中贊領司僕事上護軍. [이 ‘벽상삼한대광’이 ‘벽상삼한삼중대광’의 오기일 수도 있으나, 김심은 이후 1321년 벽상삼한삼중대광으로 ‘특수(特受)’되게 되므로, 여기서의 벽상삼한대광은 ‘대광’으로만 간주하고자 한다.] (지대)三年(1310), 爲都僉議贊成事上護軍判民部事.”
- 59) 『홍규(洪奎) 묘지명(1316)』 “男時爲大匡三司使.”; 『홍규(洪奎) 처 김씨(金氏) 묘지명(1339)』 “……

〈표 2〉 송·금·원·고려후기(충선왕대) 문산계 비교 (1품)

	송	금	원	충선왕즉위년	복위년	복위2년
정1			개부의동삼사, 의동삼사, 특진, 승진, 금자광록대부, 은청영록대부		삼중대광	삼중대광
중1	개부 의동삼사	(상) 개부의동삼사	광록대부 영록대부	승록대부	중대광	중대광
		(중) 의동삼사 [차알특진]				
		(하)승진				

〈표 3〉 고려시대 문산계 변천 현황 (정1-종5품)

	문종	충렬왕	충선왕 즉위년	충선왕 복위년	충선왕 복위2년	공민왕 5년	공민왕 11년	공민왕 18년
정1-상				三重大匡	三重大匡	開府儀同三司	壁上三韓 三重大匡	特進輔國 三重大匡
정1-하						儀同三司	三重大匡	特進三重大匡
중1-상	開府儀同三司		崇祿大夫	重大匡	重大匡	金紫光祿大夫	重大匡	三重大匡
중1-하						金紫崇祿大夫		重大匡
정2-상	特進		興祿大夫	匡靖大夫	大匡	銀青光祿大夫	匡靖大夫	光祿大夫
정2-하					正匡	銀靑榮祿大夫		崇祿大夫
중2-상	金紫光祿大夫	匡靖	正議大夫	通憲大夫	匡靖大夫	光祿大夫	奉翊大夫	榮祿大夫
중2-하					奉翊大夫	榮祿大夫		資德大夫

武德將軍全羅鎮邊萬戶大匡三司使.”

- 60) 『조연수(趙延壽) 묘지명(1325)』 “四十三(1320, 1277년생), 階大匡, 授門下侍郎平章臺, 又除守司空右僕射實文閣大學士上將軍.”
- 61) 『윤신길(尹莘傑) 묘지명(1337)』 “泰定元年(1324), 拜大匡三司使進賢館大提學上護軍冬封杞城君, 階陞重大匡.”
- 62) 『민지(閔漬) 묘지명(1326)』 “推誠亮節功臣 大匡三司使 藝文館 上護軍 李齊賢.”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정3-상	銀青光祿大夫	奉翊	正議大夫	正順大夫	正順大夫	正議大夫	正順大夫	正議大夫	
정3-하				奉順大夫	奉順大夫	通議大夫	奉順大夫	通議大夫	
종3-상	光祿大夫	이하 미상	通議大夫	中正大夫	中正大夫	大中大夫	中正大夫	大中大夫	
종3-하				中顯大夫	中顯大夫	中大夫	中顯大夫	中正大夫	
정4-상	正議大夫		大中大夫	奉常大夫	奉常大夫	中散大夫	奉常大夫	中散大夫	
정4-하	通議大夫							中議大夫	
종4-상	大中大夫		中大夫	奉善大夫	奉善大夫	朝散大夫	奉善大夫	朝散大夫	
종4-하	中大夫							朝列大夫	
정5-상	中散大夫		中散大夫	通直郎	通直郎	朝議郎	通直郎	朝議郎	
정5-하	朝議大夫	朝議大夫							
종5-상	朝請大夫		朝請大夫		朝奉郎	朝奉郎	朝奉郎	朝奉郎	朝奉郎
종5-하	朝散大夫	朝散大夫							

〈표 4〉 송·금·원 문산계 비교 (대부계 하위급)

	송	금	원
정4	(상계)정봉대부	(상)정의대부	중의대부
	(일반)중봉대부	(중)통의대부	중헌대부
		(하)가의대부	중순대부
종4	(상계)태중대부	(상)태중대부	조청대부
	(일반)중대부	(중)중대부	조산대부
		(하)소중대부	조열대부
정5	(상계)중산대부	(상)중의대부	봉정대부
	(일반)조봉대부	(중)중헌대부	봉의대부
		(하)중순대부	
종5	(상계)조산대부	(상)조청대부	봉직대부
	(일반)조청대부	(중)조산대부	봉훈대부
		(하)조열대부(구 봉덕대부)	
정6	(상계)조봉랑	(상)봉정대부	승덕랑
	(일반)승직랑	(하)봉의대부	승직랑
종6	(상계)봉직랑	(상)봉직대부	유림랑
	(일반)통직랑	(하)봉훈대부	승무랑

〈표 5〉 14세기전반 정순·봉순·중정·중현대부 보유자 대상 당사자 관계-관직 비교표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최중유	1318	정순	전의령 ⁶³⁾	종3	최서처박씨 (모친)
최원중	1321	정순	판전교시사 ⁶⁴⁾	정3	윤보처박씨 (찬)
박원	1325	정순	밀직사우부대언 지삼사사 ⁶⁵⁾	정3(부대언) 종4품급(삼사지사) *부사에 준함	박전지(부친)
최안도	1327	정순	군부판서 ⁶⁶⁾	정3(6부상서)	본인
권렴	1330	정순	좌상시 ⁶⁷⁾	정3(상시)	본인
민중유	1336~1342	정순	성균대사성 ⁶⁸⁾	정3	민사평(손자)
오침	1339	정순	판통례문사 ⁶⁹⁾	정3	김심(장인)
유보발	1340	정순	밀직사우부대언, 종부령, 감찰집의, 지판도사사 ⁷⁰⁾	정3(부대언) 종3(집의, 종부령) 3-4품(6부지사)	본인
정사도	1346	정순	우대언 동지춘추판사 ⁷¹⁾	정3(대언)	본인
김희	1355	정순	판전교시사 ⁷²⁾	정3	박원계(김희는 박원계의 외손녀사위)
민적	1308~ 1313	봉순	밀직사우승지, 전의령, 사헌집의, 지선부사 ⁷³⁾	정3(승지), 종3(전의령, 집의) 3-4품(6부지사)	본인
윤신걸	1314	봉순	밀직사우대언 ⁷⁴⁾	정3(대언)	본인
전신	1317	봉순	판내부시 지민부 ⁷⁵⁾	정3(내부시판사) 3-4품(6부지사)	본인
김승용	14세기 전반 (1329 이전)	봉순	사헌집의, 판내부사(유력) 언부전서, 동지밀직사, 밀직사(추정) ⁷⁶⁾	종3(집의, 4밀직·2밀직) 정3(6부상서, 내부시판사)	본인
박원계	1338	봉순	판소부시사 ⁷⁷⁾	정3	본인
윤해	1350	봉순	판소부시사 지전법사사 ⁷⁸⁾	정3(소부시판사) 3-4품(6부지사)	본인
박보생	1355	봉순	판위위시사 ⁷⁹⁾	정3	박원계(부친)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권렴	1324	증정	사복정 ⁸⁰⁾	정3	본인
민상정	1326	증정	밀직지신사 사헌집의 지선부사 ⁸¹⁾	종3(집의) 정3(지신사) 3-4품(6부지사)	민지(부친)
김승용	14세기 전반 (1329 이전)	증정	사재소윤-사헌장령-총부의랑 (추정) ⁸²⁾	정4(6부시랑) 종4(장령, 사재시소윤)	본인
민종유	1336~1342	증정	판도총랑→좌사의대부 ⁸³⁾	정4 (간의대부, 6부시랑)	민사평(손자)
민상백	1337	증정	사복정 ⁸⁴⁾	정3	민지처신씨 (모친)
김승사	1339	증정	응양군대호군 간변내시원사 ⁸⁵⁾	정3	김심(부친)
권주	1340	증정	삼사좌윤 ⁸⁶⁾	종3	권렴(부친)
염국보	1340	증정	전의령 ⁸⁷⁾	종3	권렴(장인)
윤해	1343	증정	삼사좌윤 ⁸⁸⁾	종3	본인
정사도	1346	증정	우사의대부 ⁸⁹⁾	정4	본인
원선지	1309	증현	밀직사우부대언 사복정 지삼사사 ⁹⁰⁾	정3(부대언) 정3(사복시 정) 종4품급(삼사지사) *부사에 준함	본인
최해	14세기초	증현	민부의랑 ⁹¹⁾	정4(6부시랑)	본인
김승용	14세기 전반 (1329 이전)	증현	사헌장령-총부의랑(추정) ⁹²⁾	종4(장령), 정4(6부시랑)	본인
민종유	1336~1342	증현	판도총랑→좌사의대부 ⁹³⁾	정4 (간의대부, 6부시랑)	민사평(손자)
이공수	1344, 1345	증현	전교령, 밀직사우부대언, 지신사 ⁹⁴⁾	종3(전교령) 정3(부대언, 지신사)	본인
최재	1355	증현	감찰집의 ⁹⁵⁾	종3	본인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김가구	1355	중현	전교령 ⁹⁶⁾	종3	박원계(외조) (박원계의 사돈은 김대경金臺卿)
박거실	1376년 이전	중현	사복정 ⁹⁷⁾	정3	이제현 (사위)

- 63)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正順大夫 典醫令 仲濤.”
- 64) 『윤보(尹瑠) 처 박씨(朴氏) 묘지명(1321)』 “正順大夫 判典校寺事 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致仕 崔元中述.”
- 65)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男日瑗, 藝文館提學正順大夫 密直司右副代言成均館大司成知製教同知春秋館事 知三司事.”
- 66) 『최안도(崔安道) 묘지명(1340)』 “陞累大護軍上護軍, 階三轉至正順. 泰定四年(1327), 主鷹揚軍 判軍簿書.”
- 67) 『권렴(權廉) 묘지명(1340)』 “庚午(1330), 東還拜正順大夫 左常侍.”
- 68)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丙子(1336), …… 入拜成均大司成充春秋館修撰官由正順進奉翊至正壬午(1342), 以 ……”
- 69) 『김심(金深) 묘지명(1339)』 “一適宣授顯正將軍全羅道鎮邊萬戶 正順大夫 判通禮門事 吳瞻.”
- 70) 『유보발(柳甫發) 묘지명(1340)』 “高麗國正順大夫 密直司右副代言 宗簿令 兼 監察執義 知版圖司事 柳君墓誌銘.”
- 71)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1346년) 冬, 進階正順大夫 右代言同知春秋館事.”
- 72)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女適正順大夫 判典校寺事 金禧.”
- 73) 『민적(閔頤) 묘지명(1336)』 “拜奉順大夫 密直司右承旨 典儀令 兼 司憲執義 知選部事.”
- 74) 『윤신걸(尹莘傑) 묘지명(1337)』 “延祐元年(1314), 累遷至奉順大夫 密直司右代言 藝文提學知製教同知春秋館事.”
- 75) 『전신(全信) 묘지명(1339)』 “丁巳(1317), 授寶文閣提學 奉順大夫 判內府寺 肅寧府右司尹知製教 知民部 提舉有備倉兼選軍別監使.”
- 76)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二十七(1294, 김승용은 1267년생), 帶弓箭入侍皇元, 自衛尉注簿歷官通禮門祗候神虎衛長史秘書郎軍簿佐郎都官正郎監察侍史司宰少尹國子司業司憲掌令摠部議郎司憲執義 判內府事 讞部典書 同知密直事 密直使 皆紹大學士上將軍, 階奉常中顯中正奉順通憲至匡靖大夫.”
- 김승용의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1329년 이전의 그의 관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 봉상-중현-중정-봉순-통현
관직) 위위주부-통례문지후-비서랑-군부좌랑-도관정랑-감찰시사-사재소윤-사헌장령-총부의랑-사헌집의-관내부사-언부전서-동지밀직사-밀직사
당사자가 보유한 관직과 관계가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다른 묘지명과 달리, 김승용의 경우

는 후대 연구에서 활용되기 매우 어려운(동시기 보유한 관직과 관계를 파악하기가 무척 애매한) 형태로 관직과 관계가 각기 열거돼 있다. 이에 향후에도 해당 관계와 관련하여 모두 제시는 하되, 관직-관계 품급의 대응관계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충선왕대 원칙에서의 이탈여부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간주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77)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戊寅(1338), 春判小府寺事, 階奉順大夫, 寶文閣提學依前知製教.”
- 78) 『윤해(尹陔) 묘지명(1380)』 “歲庚寅(1350), 以奉順大夫 判少府寺事 知典法司事, 裁決平允人無怨言.”
- 79)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男二人曰寶生, 官至奉順大夫 判衛尉寺事.”
- 80) 『권렴(權廉) 묘지명(1340/1370)』 “泰定甲子(1324), 加中正大夫 司僕正.”
- 81) 『민지(閔漬) 묘지명(1326)』 “長曰祥正, 中正大夫密直知申事司憲執義進賢館提學知制教知選部事.”
- 82)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二十七(1294, 김승용은 1267년생), 帶弓箭入侍皇元, 自衛尉注簿 歷官通禮門祇候神虎衛長史秘書郎軍簿佐郎都官正郎監察侍史司宰少尹國子司業司憲堂令摠部議 郎司憲執義 判內府事讞部典書同知密直事密直使皆紹大學士上將軍, 階奉常中顯中正奉順通憲至匡 靖大夫.” 관직의 순서상으로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중정대부 보유 시절의 역임 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여, 이 사례를 관직-관계 품급 일치화 경향에서의 이탈 사례로 간주하지는 않기로 한다.
- 83)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丙子(1336), …… 加奉常以版圖總郎 …… 以典校副令右·文館直 提學, 復版圖總郎, 館職改藝文進成均祭酒, 遷左司議大夫, 階以中顯堊中正 …… 入拜成均大司成 充春秋館修撰官由正順進奉翊. 至正壬午(1342) ……”
- 84) 『민지(閔漬) 처 신씨(申氏) 묘지명(1337)』 “季曰祥伯, 中正大夫司僕正知鐵原府事.”
- 85) 『김심(金深) 묘지명(1339)』 “男曰承嗣, 中正大夫鷹揚軍大護軍幹辦內侍院事.”
- 86)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曰鑄, 中正大夫三司左尹進賢館直提學知製教.”
- 87)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適中正大夫典儀令寶文閣直提學知製教廉國寶.”
- 88) 『윤해(尹陔) 묘지명(1380)』 “歲癸未(1343), 進中正大夫三司左尹.”
- 89)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明年(1346), 陞左副代言典理摠郎, 又陞右代言知軍簿, 六月進右 司義大夫, 階中正大夫 ……”
- 90) 『원선지(元善之) 묘지명(1330)』 “明年(1309), 德陵召至大都大見眷, 遇拜中顯大夫密直司右副代言 司僕正知三司事.”
- 91) 『최해(崔濳) 묘지명(1340)』 “狀元及第名聞于朝授高麗王京儒學教授, 累遷本國民部議郎階中顯大 夫.”
- 92)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二十七(1294, 김승용은 1267년생), 帶弓箭入侍皇元, 自衛尉注簿 歷官通禮門祇候神虎衛長史秘書郎軍簿佐郎都官正郎監察侍史司宰少尹國子司業司憲堂令摠部議 郎司憲執義判內府事讞部典書同知密直事密直使皆紹大學士上將軍, 階奉常中顯中正奉順通憲至匡 靖大夫.” 밑줄 친 관직과 관계를 김승용이 동시기에 보유했던 관직과 관계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논의하지 않는다.
- 93) (주68)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참조.

〈표 6〉 14세기전반 4-5품 문산계 보유자 대상 당사자 관계-관직 비교표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배정지	1308	봉상	홍신군호군, 응양군호군 ⁹⁸⁾	4품급(호군)	본인
전신	1309	봉상	전의부령, 총부의랑 ⁹⁹⁾	중4품급 (전의시 부령) 정4(6부시랑)	본인
원충	1310년경	봉상	전부령, 사복정 ¹⁰⁰⁾	정3(사복정)	본인
윤신걸	1312	봉상	전의부령, 선부의랑 ¹⁰¹⁾	중4품급 (전의시 부령) 정4(6부시랑)	본인
문증	1318년 이전	봉상	선부의랑 ¹⁰²⁾	정4	최서처박씨 (사돈)
최안도	1317	봉상	호군 ¹⁰³⁾	4품급	본인
권렴	1318	봉상	삼사 부사 ¹⁰⁴⁾	정4/중4품	본인
김승용	14세기 전반 (1329 이전)	봉상	위위주부, 통례문지후, 비서랑, 군부좌랑, 도관정랑 ¹⁰⁵⁾	7~5품급	본인
안목	1329	봉상	사헌장령 ¹⁰⁶⁾	중4	안우기(부친)
김영돈	1332	봉상	전법총랑 ¹⁰⁷⁾	정4(6부 시랑)	김순처허씨 (모친)
박원계	1335	봉상	감찰장령 ¹⁰⁸⁾	중4	본인
민종유	1336	봉상	판도총랑 ¹⁰⁹⁾	정4	민사평(손자)
이달존	1340	봉상	전리총랑 ¹¹⁰⁾	정4	본인
윤해	1341	봉상	통례문부사 ¹¹¹⁾	정4(통례문 부사)	본인
홍수산	14세기전반	봉상	통례문부사 ¹¹²⁾	정4(통례문 부사)	홍빈(부친)
이공수	1343	봉상	전교부령 ¹¹³⁾	중4(전교시 부령)	본인

94) 『이공수(李公遂) 묘지명(1366)』 “歲甲申(1344). 進中顯大夫典校令密直司右副代言藝文館直提學知製教. 乙酉(1345), 遷至知中事.”

95) 『최재(崔宰) 묘지명(1378)』 “乙未(1355), 秋以中顯大夫監察執義直實文閣.”

96)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外孫男女若干人日可久中顯大夫典校令.” (‘女一人, 適檢校成均大司成金臺卿.’)

97)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壽春國夫人朴氏(이제현의 둘째 처), 宣授西京等處萬戶府副萬戶中顯大夫司僕正諱居實之女 生一男三女.”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정사도	1345	봉상	밀직사좌부대언, 군부총랑 ¹¹⁴⁾	정3(부대언) 정4(6부시랑)	본인
유숙	1351	봉상	밀직사좌부대언, 군부총랑, 지삼사사 ¹¹⁵⁾	정3(부대언) 정4(6부시랑) 종4품급(삼사지사) *부사에 준함	본인
박경	1355	봉상	삼사부사 ¹¹⁶⁾	정4/종4품	박원계(조부)
윤신걸	1308	봉선	우헌납, 강릉부익선 ¹¹⁷⁾	정5(헌납)	본인
원선지	1308	봉선	섭좌우위 호군 ¹¹⁸⁾	4품급(호군)	본인
이조년	1330	봉선	사헌장령 ¹¹⁹⁾	종4	본인
김영후	1332	봉선	자섭사사 ¹²⁰⁾	미상	김순처허씨 (모친)
민종유	1332	봉선	위위소운 ¹²¹⁾	종4	민사평(손자)
윤해	1340	봉선	홍위위 정용 호군 ¹²²⁾	4품급(호군)	본인
홍귀	1354	봉선	홍위위 보승 호군 ¹²³⁾	4품급(호군)	홍빈(조부)
정운	1379이전	봉선	언부의랑 ¹²⁴⁾	정4(6부시랑)	정사도(손자)
정지	1355	봉선	사재부령 ¹²⁵⁾	종4(사재시 부령)	박원계 (정지는 박원계의 외손녀사위)
김개물	1325	통직랑	사헌지평 ¹²⁶⁾	정5	본인
민상백	1326	통직랑	언부직랑 ¹²⁷⁾	정5(6부낭중)	민지(부친)
송한	1330이전	통직랑	도관직랑 ¹²⁸⁾	정5	원선지(찬)
박덕룡	1341	통직랑	기거랑 ¹²⁹⁾	종5/정5품	박원(부친)
박수룡	1341	통직랑	통례문판관 ¹³⁰⁾	정5	박원(부친)
이인복	1341이후	통직랑	전의시승, 우헌납, 기거랑, 기거주 ¹³¹⁾	정5품(전의시 승 · 헌납 · 기거랑 · 기거주)	본인

98) 『배정지(裴廷芝) 묘지명(1322)』 “大尉王知其賢嘗有大用意, 及嗣位擢爲奉常大夫弘信軍護軍, 尋加應揚軍護軍.”

99) 『전신(全信) 묘지명(1339)』 “至大己酉(1309). 以典儀副金召階加奉常大夫, 三改官爲摠郎議郎.”

100) 『원충(元忠) 묘지명(1337)』 “轉典符舍司僕正穰華右司尹, 階由奉常至奉順大夫.” 사복정의 경우

정3품급이어서 이를 봉상대부 보유시의 보유관직으로 볼 경우 관직-관계 품급 일치화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되지만, 그 앞에 역임했던 전부령은 4품직이었을 수도 있다. 다만 전부령은 그 품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 101) 『윤신걸(尹莘傑) 묘지명(1337)』 “皇慶元年(1312), 轉典儀副令 選部議郎知製教階奉常.”
- 102)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三男密直司堂後官季濡, 娶奉常大夫選部議郎文公証之三女.”
- 103) 『최안도(崔安道) 묘지명(1340)』 “延祐四年(1317), 拜護軍階奉常大夫.”
- 104) 『권렴(權廉) 묘지명(1340)』 “戊午(1318), 拜三司副使階奉常大夫.”
- 105)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二十七(1294, 김승용은 1267년생), 帶弓箭入侍皇元, 自衛尉注簿, 歷官通禮門祇候 神虎衛長史 秘書郎 軍簿佐郎 都官正郎 …… 階奉常中顯中正奉順通憲至匡靖大夫.” 정4품급 관계 보유 당시 5품 이하 관직들을 보유했던 셈이어서 김승용의 사례는 충선왕대의 원칙과 맞아 보이지 않으나, 통계산출에 활용해도 좋을지의 사례인지는 여전히 미상이다.
- 106) 『안우기(安于器) 묘지명(1329)』 “次曰牧, 奉常大夫司憲掌令.”
- 107) 『김순(金恂) 처 허씨(許氏) 묘지명(1332)』 “長曰永暉, 奉常大夫典法摠郎.”
- 108)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乙亥(1335), 春拜奉常大夫監察掌令.”
- 109)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丙子(1336), …… 加奉常以版圖摠郎 ……”
- 110) 『이달존(李達尊) 묘지명(1340)』 “高麗國奉常大夫典理摠郎寶文閣直提學知製教李君墓表.”
- 111) 『윤해(尹孩) 묘지명(1380)』 “明年(1341), 陞奉常兼通禮門副使興拜周旋皆中 ……”
- 112) 『홍빈(洪彬) 묘지명(1354)』 “日壽山 …… 壽山仕元朝累轉內藏庫副使高州同知秘書郎中尙經歷陸運提舉官至奉訓大夫, 本國奉常大夫通禮門副使.”
- 113) 『이공수(李公遂) 묘지명(1366)』 “歲癸未(1343), 加奉常移典校副令充春秋館修撰官.”
- 114)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1345)冬十一月, 擢密直司左副代言軍簿摠郎藝文館直提學知製教充春秋館編修, 官階仍奉常.”
- 115)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玄陵卽位(1351) 行至遼陽城, 授密直司左副代言軍簿摠郎, 階奉常大夫. 藝文館直提學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知三司事.”
- 116)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判書(朴童生: 박원계의 아들)先娶益齋侍中之女, 生男日經, 奉常大夫三司副使.”
- 117) 『윤신걸(尹莘傑) 묘지명(1337)』 “至大元年(1308), 革官爲右獻納江陵府翊善成均樂正階奉善大夫.”
- 118) 『원선지(元善之) 묘지명(1330)』 “二十八(1308, 1280년생), 攝左右衛護軍帶奉善大夫.”
- 119) 『이조년(李兆年) 묘지명(1344)』 “以前秘書丞起爲奉善大夫司憲掌令(『고려사』 세가, 1330년 12월).”
- 120) 『김순(金恂) 처 허씨(許氏) 묘지명(1332)』 “次曰永煦, 奉善大夫資贍司使.”
- 121)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至順壬申(1332), 毅陵復位大明黜陟, 公拜衛尉少尹知製教階奉善.”
- 122) 『윤해(尹孩) 묘지명(1380)』 “至元庚辰(1340), 超授興威衛精勇護軍, 階奉善大夫.”
- 123) 『홍빈(洪彬) 묘지명(1354)』 “貴, 今爲奉善大夫興威衛保勝護軍.”

〈표 7〉 충선왕대 이후 광정대부 보유자들의 책임 관직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원관	1307~1309	광정	도침의시랑찬성사, 첨의중호 행민부전서, 밀직사사, 민부전서 (첨의찬성사 판총부사 은퇴) ¹³²⁾	2재신(정2) 2밀직(중2) 상서(정3)	본인
민중유	1307~1308	광정	판밀직사, 감찰대부, 찬성사 ¹³³⁾	1밀직(중2) 2재신(정2) 대부(정2→정3)	본인
이진	1312	광정	첨의찬성사 판민부사 ¹³⁴⁾	2재신(정2) 6부판사	권단(찬)
오잡	1313~1314	광정	밀직사사, 판전의시사, 총부전서, 언부전서, 판전교시사 ¹³⁵⁾ 첨의평리, 삼사사	2밀직/3재신(중2) 삼사사(2-3품급) 6부상서(정3) 전의시/전교시 판사(정3품급)	본인
윤신걸	1316	광정	밀직사 ¹³⁶⁾	2밀직(중2)	본인
원충	1320	광정	밀직사, 상의평리 ¹³⁷⁾	2밀직/3재신(중2)	본인
박지량	1321이전	광정	판삼사사 상호군 ¹³⁸⁾	삼사판사(재신겸)	윤보처박씨 (사돈)
이제현	1324~1326	광정	밀직사사, 첨의평리, 정당문학(오기 추정), 삼사사 ¹³⁹⁾	2밀직/3재신(중2) 삼사사(정3)	본인
정탁	1325이전	광정	첨의평리 ¹⁴⁰⁾	3재신(중2)	박전지(장인)
홍경일	1325이전	광정	첨의찬성사 ¹⁴¹⁾	2재신(정2)	박전지(사돈)
원선지	1325	광정	검교첨의평리 ¹⁴²⁾	3재신(중2)	본인

124)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祖諱潤，奉善大夫獻部議郎知製教.”

125)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次適奉善大夫司宰副令鄭漬.”

126) 『김개물(金開物) 묘지명(1327)』 “秦定乙丑(1325)，今王回自都慨然有意反正，授君通直郎司憲持
卹.”

127) 『민지(閔漬) 묘지명(1326)』 “季曰祥伯，爲通直郎讞部直郎.”

128) 『원선지(元善之) 묘지명(1330)』 “前通直郎都官直郎宋翰書.”

129) 『박원(朴遠) 묘지명(1341)』 “通直郎起居郎知製教德龍.”

130) 『박원(朴遠) 묘지명(1341)』 “通直郎通禮門判壽龍.”

131) 『이인복(李仁復) 묘지명(1375)』 “至正辛巳(1341) …… 五月，拜左正言知製教，俄陞通直郎典儀寺
承知製教 ……，歲壬午(1342)，…… 遷右獻納，歲癸未(1343)，再遷起居郎起居注 ……”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나익희	1326	광정	첨의평리 ¹⁴³⁾	3재신(중2)	민지(장인)
안우기	1329	광정	검교첨의찬성사, 판전의시사 ¹⁴⁴⁾	2재신(정2)	본인
김승용	1329	광정	밀직사 ¹⁴⁵⁾	2밀직(중2)	본인
원선지	1330	광정	검교첨의평리, 판내부시사 ¹⁴⁶⁾	3재신(중2)	본인
민적	1331	광정	밀직사 ¹⁴⁷⁾	2밀직(중2)	본인
이제현	1335, 36 이전	광정	정당문학 ¹⁴⁸⁾	4재신(중2)	박거실처원씨 (장모) 민적(찬)
박원	1336이전	광정	정당문학 ¹⁴⁹⁾	4재신(중2)	박원처흥씨 (부인)
오선	1336이전	광정	첨의시랑찬성사 판판도사사 ¹⁵⁰⁾	2재신(정2)	오잡(아들)
민적	1336	광정	밀직사사 ¹⁵¹⁾	2밀직(중2)	본인
박인간	1336	광정	첨의평리 ¹⁵²⁾	3재신(중2)	박화(부친)
신사전	1337이전	광정	첨의시랑찬성사 판전리사 ¹⁵³⁾	2재신(정2)	민지처신씨 (딸)
권렴	1338	광정	첨의찬성사 ¹⁵⁴⁾	2재신(정2)	본인
이언충	1338	광정	정당문학, 첨의평리 ¹⁵⁵⁾	4재신/3재신(중2)	본인
원송수	1340이전	광정	정당문학 ¹⁵⁶⁾	4재신(중2)	권렴(장인)
김승석	1339	광정	삼사우사, 판사재시사 ¹⁵⁷⁾	삼사사(정3)	김심(부친)
최현	1340	광정	검교첨의평리 ¹⁵⁸⁾	3재신(중2)	최안도(아들)
박원	1341	광정	정당문학, 감찰대부, 군부판서 ¹⁵⁹⁾	4재신(중2) 6부상서, 감찰대부 (정3)	본인
나익희	1344	광정	상의평리/첨의참리 ¹⁶⁰⁾	3재신(중2)	본인
최문도	1345	광정	도첨의참리 ¹⁶¹⁾	3재신(중2)	본인
이공수	1348~1350	광정	판밀직사사, 감찰대부, 정당문학 ¹⁶²⁾	1밀직/4재신(중2) 감찰대부(3품)	본인
윤선좌	1349	광정	첨의평리 ¹⁶³⁾	3재신(중2)	본인
김광재	1349	광정	첨의평리 ¹⁶⁴⁾	3재신(중2)	본인
안진	1349	광정	검교도첨의참리 ¹⁶⁵⁾	3재신(중2)	유돈(찬)
유돈	1349	광정	도첨의찬성사 판판도사사 ¹⁶⁶⁾	2재신(정2)	본인
김륜	14세기 전반	광정	검교첨의평리 ¹⁶⁷⁾	3재신(중2)	본인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이인복	1353~1354	광정	정당문학, 감찰대부 ¹⁶⁸⁾	4재신(중2) 감찰대부(정3)	본인
민적	1359이전	광정	밀직사사 ¹⁶⁹⁾	2밀직(중2)	민사평(아들)

- 132) 『원관(元瓘) 묘지명(1316)』 “大德十一年丁未(1307) …… 爲匡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商議都僉議事。戊申(1308) (改)授僉議中護行民部典書領典儀(等)事。[己酉(1309), 又改爲密直司使仍兼民部典書復參機密 …… 以匡靖大夫僉議贊成事 …… [判]總副事致仕。”
- 133) 『민중유(閔宗儒) 묘지명(1324)』 “丁未(1307), 起授判密直司改監察大夫陞匡靖大夫遙授贊成事, 太尉王元年(1309) …… 以僉議贊成事致仕。”
- 134) 『권단(權坦) 묘지명(1312)』 “匡靖大夫僉議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判民部事致仕李璵述。”
- 135) 『오잠(吳潛) 묘지명(1336)』 “(황경)二年(1313) 二月, 獨就移匡靖大夫 密直司事 判典儀寺事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三月, 移總部典書餘如故 …… 七月, 移讞部典書上護軍餘如故。是月, 又移判典校寺事餘如故。十二月, 加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上護軍, 三年(1314[연우 원년]) 正月, 加三司使上護軍。”
- 136) 『윤신걸(尹莘傑) 묘지명(1337)』 “(연우)三年(1316), 拜通憲大夫密直副使兼選部典書, 遷同知密直知密直密直使, 陞藝文大提學知春秋館階匡靖。”
- 137) 『원충(元忠) 묘지명(1337)』 “(연우)七年(1320), 陞密直使階匡靖, 尋出爲商議評理。”
- 138) 『윤보(尹瑠) 처 박씨(朴氏) 묘지명(1321)』 “次日諱左右衛保勝中郎將, 媿匡靖大夫判三司事上護軍朴之亮皇之第二女。”
- 139)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泰定甲子(1324), 加匡靖大夫密直司事。乙丑(1325), 改賜功臣日下推誠亮節, 再轉僉議評理政堂文學。丙寅(1326), 移三司使。”
- 140)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長女延興君夫人, 適前匡靖大夫僉議評理上護軍鄭諱倬。”
- 141)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男日瑗藝文館提學正順大夫密直司右副代言成均館大司成知製教同知春秋館事知三司事, 娶唐城郡夫人洪氏 匡靖大夫僉議贊成事上護軍贈諡良順公洪敬一之女也。”
- 142) 『원선지(元善之) 묘지명(1330)』 “泰定甲子(1324), 入密直爲副使遷同知司事才一年罷, [1325]爲匡靖大夫檢校僉議評理上護軍家居六年。”
- 143) 『민지(閔漬) 묘지명(1326)』 “女一適管軍萬戶匡靖大夫僉議評理上護軍羅益禧。”
- 144) 『안우기(安于器) 묘지명(1329)』 “高麗國匡靖大夫檢校僉議贊成事兼判典儀寺事上護軍安公墓誌銘。”
- 145)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宣授宣武將軍管高麗軍萬戶匡靖大夫密直使實文閣大提學上護軍金公奉表朝元。”
- 146) 『원선지(元善之) 묘지명(1330)』 “大元故征東都鎮撫高麗國匡靖大夫檢校僉議評理兼判內府寺事元公墓誌。”
- 147) 『민적(閔頤) 묘지명(1336)』 “辛未(1331) 復爲密直使大進賢階匡靖。”
- 148) 『박거실(朴居實) 처 원씨(元氏) 묘지명(1335)』 “次適宣授王府斷事官匡靖大夫前政堂文學李齊

- 賢.”; 『민적(閔頤) 묘지명(1336)』 “前匡靖大夫政堂文學右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李齊賢撰.”
- 149) 『박원(朴遠) 처 홍씨(洪氏) 묘지명(1336)』 “匡靖大夫前政堂文學遠之妻.”
- 150) 『오잠(吳潛) 묘지명(1336)』 “父匡靖大夫僉議侍郎贊成事判版圖郎事上護軍致仕諱睿.”
- 151) 『민적(閔頤) 묘지명(1336)』 “故匡靖大夫密直司使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閔公墓誌銘”
- 152) 『박화(朴華) 묘지명(1336)』 “仁幹登庚子科又中乙卯應舉試魁盡誠秉義翊贊功臣匡靖大夫僉議評理見任漢陽府尹.”
- 153) 『민지(閔漬) 처 신씨(申氏) 묘지명(1337)』 “父諱思佺匡正大夫僉議侍郎贊成事上將軍判典理司事諡純簡.”
- 154) 『권렴(權廉) 묘지명(1340)』 “歲戊寅(1338) 春三月, 毅陵曰玄福君可與議政事於試批公匡靖大夫僉議贊成事.”
- 155) 『이언충(李彦冲) 묘지명(1338)』 “大元高麗國故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李公墓誌.”; “…… 密直副使上護軍匡靖大夫政堂文學僉議評理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爲公平日所歷官也.”
- 156)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適宣授征東行中書省都鎮撫司都鎮無忠勤贊化功臣匡靖大夫政堂文學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元松壽.”
- 157) 『김심(金深) 묘지명(1339)』 “歟子曰承石, 今爲匡靖大夫三司右使上護軍判司宰寺事.”
- 158) 『최안도(崔安道) 묘지명(1340)』 “考諱玄爲匡靖大夫檢校僉議評理上護軍.”
- 159) 『박원(朴遠) 묘지명(1341)』 “推忠翊戴功臣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兼監察大夫軍簿判書上護軍慶源君諡文康公墓誌.”
- 160) 『나익희(羅益禧) 묘지명(1344)』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爲匡靖大夫商議評理…… 今王嗣政起復爲僉議參理.”
- 161) 『최문도(崔文度) 묘지명(1345)』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 162) 『이공수(李公遂) 묘지명(1366)』 “乙酉遷至知申事其冬移典理判書明年進監察大夫丁亥秋七月拜密直副使 戊子(1348) 春正月, 進匡靖大夫判密直司使, …… 夏六月, 兼監察大夫, 歲庚寅(1350), 拜政堂文學.”
- 163) 『윤선좌(尹宣佐) 묘지명(1349)』 “高麗國匡靖大夫僉議評理藝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致仕尹公墓誌銘.”
- 164) 『김광재(金光載) 묘지명(1371)』 “己丑(1349), 忠定王立開書筵以公爲師公固辭, 入僉議爲評理匡靖大夫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 165) 『유돈(柳墩) 묘지명(1349)』 “勅授將仕郎匡靖大夫檢校都僉議參理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安山君安震撰.”
- 166) 『유돈(柳墩) 묘지명(1349)』 “匡靖大夫都僉議贊成事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判版圖司事致仕柳公墓誌銘.”
- 167) 『김륜(金倫) 묘지명(1348)』 “以檢校僉議評理階匡靖大夫.”
- 168) 『이인복(李仁復) 묘지명(1375)』 “歲癸巳(1353) 復入密直判司宰寺事, 秋進拜匡靖大夫政堂文學進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표 8〉 충렬왕대 광정대부 보유자들의 역임 관직(고위·중급·하위 재신별로 음영구분)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신사전	13세기 후반	광정	첨의찬성사 ¹⁷⁰⁾	2재신(정2)	민지(사위)
김구	1278	광정	첨의시랑찬성사 ¹⁷¹⁾	2재신(정2)	본인
김방경	1283	광정	판도첨의사 판전리사사 ¹⁷²⁾	1재신(중1)	본인 김순(아들) 김승용(손자)
원부	1287	광정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¹⁷³⁾	1재신(중1)	본인
채모	1290이후	광정	첨의시랑찬성사 판군부사사 ¹⁷⁴⁾	2재신(정2)	본인
허공	1286~1291	광정	첨의시랑찬성사,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¹⁷⁵⁾	2재신(정2) 1재신(중1)	본인/ 김변(사위)
홍규	1291	광정	첨의시랑찬성사 ¹⁷⁶⁾	2재신(정2)	본인
권단	1294	광정	도첨의시랑찬성사 판도사사사 ¹⁷⁷⁾	2재신(정2)	본인
홍규	1295	광정	도첨의중찬 ¹⁷⁸⁾	1재신(중1)	본인
유경	13세기 후반	광정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¹⁷⁹⁾	1재신(중1)	유보발(증손)
김훤	1303	광정	도첨의찬성사 판판도사사 ¹⁸⁰⁾	2재신(정2)	본인
안우기	1305이후	광정	검교찬성사 ¹⁸¹⁾	2재신(정2)	본인
정인경	1306	광정	도첨의중찬 판전리사 ¹⁸²⁾	1재신(중1)	본인
채모	1290	광정	도첨의참리 상장군 ¹⁸³⁾	3재신(중2)	본인
김훤	1296	광정	정당문학 ¹⁸⁴⁾	4재신(중2)	본인 ¹⁸⁵⁾
김군	1299	광정	도첨의참리 ¹⁸⁶⁾	3재신(중2)	김훤(동생)
김흔	1300	광정	도첨의참리 ¹⁸⁷⁾	3재신(중2)	김방경(부친)
김변	1300~1301	광정	도첨의참리 ¹⁸⁸⁾	3재신(중2)	본인
민지	1302	광정	도첨의참리 ¹⁸⁹⁾	3재신(중2)	채모(찬)
안우기	1305이후	광정	검교첨의평리(주176 참조)	3재신(중2)	본인
박전지	1307~1308	광정	정당문학, 검교평리 ¹⁹⁰⁾	4재신/3재신(중2)	본인
김심	1307	광정	도첨의참리 판삼사사 ¹⁹¹⁾	3재신(중2)	본인
허공	1279~1286	광정	지도첨의사, 참문학사 ¹⁹²⁾	5재신/4재신(중2)	본인

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明年(1354) 兼監察大夫.”

169)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考諱嶺匡靖大夫密直司使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諡文順.”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김주정	1281~1284	광정	판밀직사사, 지침의부사 ¹⁹³⁾	1밀직/5재신(중2)	본인 김심(아들)
권단	1289	광정	지침의부사 ¹⁹⁴⁾	5재신(중2)	본인
김변	1299	광정	판삼사사, 지도침의사사 ¹⁹⁵⁾	5재신(중2)	본인
김태현	1300~1305	광정	밀직사사, 지침의부사 ¹⁹⁶⁾	2밀직/5재신(중2)	본인
오잠	1302~1303	광정	지도침의사사, 정당문학 ¹⁹⁷⁾	5재신/4재신(중2)	본인

- 170) 『민지(閔漬) 묘지명(1326)』 “娶 匡靖大夫 僉議贊成事 申[思]徐之女.” (민지는 1326년 사망 당시 79세였으므로 1247년경 생으로 추측되며 혼인은 1260~1270년대에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71) 『김구(金丘) 묘지명(1278)』 “匡靖大夫 簽議侍郎 贊成事實 文署大學士 同修國史 判文翰署事 金丘墓誌.”
- 172) 『김방경(金方慶) 묘지명(1300)』 “癸未(1283) 又上章懇乞上不得已加三韓壁上推忠靖難定遠功臣 匡靖大夫 三重大匡判都僉議事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仍令致仕.”; 『김순(金恂) 묘지명(1321)』 “考諱方慶 …… 匡靖大夫 三重大匡判都僉議司事典理司事上將軍上洛郡.”;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祖 …… 匡靖大夫 三重大匡都僉議中贊上將軍判典理事世子師上洛公諱方慶.”
- 173) 『원부(元傅) 묘지명(1287)』 “卒匡靖大夫 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世子師元公墓誌.”
- 174) 『채모(蔡謨) 묘지명(1302)』 “庚寅(1290) 春, 以匡靖大夫 都僉議參理上將軍致仕懸車之. 後至僉議侍郎贊成事判軍簿司事.”
- 175) 『허공(許珙) 묘지명(1291)』 “己卯(1279), 拜匡靖大夫 知僉議事實 文署大學士 同修國史 參文學事 判版圖事 集賢殿大學士 修國史 判軍簿司事. 五十四丙戌(1286), 拜僉議侍郎贊成事 修文殿大學士 判典理司事 …… 卒匡靖大夫 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世子師贈諡文敬公許墓誌.”; 『김변(金賔) 묘지명(1301)』 “匡靖大夫 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典理事世子師贈諡文敬公許諱珙公之冰清也.”
- 176) 『홍규(洪奎) 묘지명(1316)』 “辛卯年(1291), 下批爲推忠安社功臣匡靖大夫 僉議侍郎贊成事.”
- 177) 『권단(權坦) 묘지명(1312)』 “己丑(1289), 引年上表乞退甚篤因下批爲匡靖大夫 知僉議府事實 文閣大學士 同修國史 仍令致仕. 甲午(1294), 加都僉議侍郎贊成事 集賢殿大學士 修國史 判版圖司事. 戊戌, 別判下書題宰臣. 辛丑(1301), 授修文殿大司學判軍簿司事.”
- 178) 『홍규(洪奎) 묘지명(1316)』 “乙未年(1295), 爲匡靖大夫 三重大匡 都僉議中贊 竝是致仕, 從其望也.”
- 179) 『유보발(柳甫發) 묘지명(1340)』 “諱墩, …… 官至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諡文正, 於君爲曾祖.”
- 180) 『김훤(金桓) 묘지명(1305)』 “大德七年(1303), …… 十二月二十九日下批, 爲匡靖大夫 都僉議贊成事 延英殿大司學判版圖司事致仕.”
- 181) 『안우기(安于器) 묘지명(1329)』 “後拜匡靖大夫 檢校僉議評理再加檢校贊成事 兼判典儀寺事上護軍.”

〈표 9〉 충선왕대 이후 봉익대부 보유자들의 역임 관직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민중유	1298	봉익	밀직부사 ¹⁹⁸⁾	5밀직(정3)	본인
김순	1298	봉익	밀직부사 ¹⁹⁹⁾	5밀직(정3)	본인 김방경(부친)
민중유	1298, 1307	봉익	밀직부사, 판밀직사 ²⁰⁰⁾	5밀직(정3) 1밀직(중2)	본인

- 182) 『정인경(鄭仁卿) 묘지명(1306)』 “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匡靖大夫都僉議中贊上護軍判典理事致仕鄭公墓誌銘.”
- 183) 『채모(蔡謨) 묘지명(1302)』 “庚寅(1290) 春, 以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將軍致仕.”
- 184) 『김훤(金暄) 묘지명(1305)』 “匡靖大夫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致仕金暄自撰.”; “丙申(1296) 在燕京拜匡靖大夫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
- 185) 김훤이 찬한 김변의 묘지명에 동일 내용이 발견된다(『김변(金賸) 묘지명(1301)』 “匡靖大夫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致仕 金暄 撰.”).
- 186) 『김변(金賸) 묘지명(1301)』 “二兄匡靖大夫都僉議參理致仕諱顯, 己亥(1299) 十一月薨.”
- 187) 『김방경(金方慶) 묘지명(1300)』 “忻爲管高麗軍万户鎮國上將軍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將軍.”
- 188) 『김변(金賸) 묘지명(1301)』 “庚子(1300), 加參理集賢殿大學士同修國史.”; “匡靖大夫都僉議參理集賢殿大學士同修國史金賸墓誌.”
- 189) 『채모(蔡謨) 묘지명(1302)』 “大德六年(102) 壬寅 九月日, 光祿大夫(광록대부의 오기) 都僉議參理英賢殿大學士同修國史判文翰署事閔漬製.”
- 190)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丁未(1307), 春授奉翊大夫密直副使寶文閣大司學秋加判密直司提修史 加判密直司提修史, 尋加匡靖大夫, 冬口省爲政堂文學僉議都監使. 至大戊申(1308), 以檢校評理.”
- 191) 『김심(金深) 묘지명(1339)』 “丁未(1307), 爲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判三司事.”
- 192) 『허공(許琜) 묘지명(1291)』 “四十七, 己卯(1279), 拜匡靖大夫 知都僉議事 寶文署大學士同修國史 參文學事 判版畫事 集賢殿大學士修國史 判軍簿司事. 五十四丙戌(1286) ……”
- 193) 『김주정(金周鼎) 묘지명(1290)』 “辛巳(1281) …… 拜匡靖大夫判密直司口監察口學士承口兼口將. 甲申(1284), …… 知僉議府事.”; 『김심(金深) 묘지명(1339)』 “考諱周鼎, 宣授昭勇大將軍管軍萬戶匡靖大夫知都僉議府事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判三司事上將軍諡文肅公.”
- 194) 『권단(權坦) 묘지명(1312)』 “己丑(1289), 引年上表乞退甚篤因下批爲匡靖大夫知僉議府事.”
- 195) 『김변(金賸) 묘지명(1301)』 “己亥(1299), 爲匡靖大夫判三司事寶文閣大學士, 俄遷知都僉議司事.”
- 196) 『김태현(金台鉉) 묘지명(1330)』 “中遷密直司事帶大寶文, 轉匡靖大夫. 乙巳(1305), 入僉議爲知司事.”
- 197) 『오잠(吳潛) 묘지명(1336)』 “六年(1302) …… 十月, 加匡靖大夫知都僉議使司事寶文閣大司學同提修史上護軍. 七年(1303) 閏五月, 加政堂文學延英殿大司學已上皆.”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박전지	1307	봉익	밀직부사, 환밀직사 ²⁰¹⁾	5밀직(정3) 1밀직(종2)	본인
박부	1318이전	봉익	밀직부사, 군부판서 ²⁰²⁾	5밀직(종2)	최서처박씨 (딸)
최서	1318이전	봉익	판도판서, 문한사학 ²⁰³⁾	6부상서(정3)	최서처박씨 (부인)
허용	1319이전	봉익	전리판서 ²⁰⁴⁾	6부상서(정3)	허용처이씨 (부인)
최성지	1324년경	봉익	삼사사, 첨의평리 ²⁰⁵⁾	3재신(종2)	본인
김선	1329이전	봉익	부지밀직사사, 전법판서 ²⁰⁶⁾	4.5밀직(종2) 6부 상서	김승용(아들)
최안도	1330	봉익	부밀직사, 감찰대부, 동지밀직사사 ²⁰⁷⁾	4.5밀직/4밀직 (종2)	본인
전신	1330	봉익	감찰대부 ²⁰⁸⁾	감찰대부(종3)	본인
민종유	1344~1349	봉익	전리판서, 감찰대부, 밀직제학, 밀직부사, 지밀직사사, 첨의참리 ²⁰⁹⁾	7→5→3밀직 (정3→종2) 3재신(종2)	본인
이암	1340	봉익	지신사→성군대사성 ²¹⁰⁾	비밀직(정3)	본인
권현	1340	봉익	판도판서 ²¹¹⁾	6부상서	권렴(부친)
권호	1340	봉익	전법판서 ²¹²⁾	6부상서	권렴(부친)
권균	1340	봉익	전공판서 ²¹³⁾	6부상서	권렴(부친)
오중화	1340	봉익	판전의시사 ²¹⁴⁾		권렴(장인)
권용	1344	봉익	우상시 ²¹⁵⁾	상서(정3)	권부처유씨 (증조모)
최문도	1344	봉익	동지밀직사사 ²¹⁶⁾	4밀직(종2)	나익희(장인)
나영걸	1344	봉익	밀직부사 ²¹⁷⁾	5밀직(정3)	나익희(부친)
이인복	1345~1346	봉익	군부판서, 전리판서, 밀직제학, 밀직부사, 지밀직사 ²¹⁸⁾	6부상서 7→5→3밀직 (정3→종2)	본인
정사도	1347	봉익	지신사, 지전리→전리판서 ²¹⁹⁾	비밀직(정3) 6부지사, 상서	본인
이강	1349이전	봉익	지신사, 제학, 부사 ²²⁰⁾	비→7→5밀직 (정3)	본인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이인복	1352	봉익	밀직사사 ²²¹⁾	2밀직(종2)	권준(찬)
박동생	1355	봉익	전공판서 ²²²⁾	6부상서	박원계(부친)
유숙	1355	봉익	판전교시사, 판도판서, 전리판서 ²²³⁾	6부상서	본인
민유	1358	봉익	우상시 ²²⁴⁾	비재신(정3)	김태현처왕씨(장모)
신천	1378이전	봉익	판밀직사사 ²²⁵⁾	1밀직(종2)	최재(사위)

- 198) 『민종유(閔宗儒) 묘지명(1324)』 “戊戌(1298), 進授奉翊大夫密直副使.”
- 199) 『김순(金恂) 묘지명(1321)』 “(1298) 十二月, 拜奉翊大夫密直司副使文翰學士.”; 『김방경(金方慶) 묘지명(1300)』 “恂爲奉翊大夫密直司副使判秘書事文翰學士.”
- 200) 『민종유(閔宗儒) 묘지명(1324)』 “戊戌(1298), 進授奉翊大夫密直副使 …… 丁未(1307) 起授判密直司改監察大夫.”
- 201)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丁未(1307), 春授奉翊大夫密直副使實文閣大司學, 秋加判密直司提修史 加判密直司提修史 ……”
- 202)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奉翊大夫密直副使重簿判書上將軍諱璋之第三女.”
- 203)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追封匡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行奉翊大夫版圖判書文翰司學致仕崔諱瑞之配也.”
- 204) 『허옹(許邕) 처 이씨(李氏) 묘지명(1381)』 “己未(1319), 令配卒奉翊大夫典理判書進賢館提學上護軍迂軒許氏邕.”
- 205) 『최성지(崔誠之) 묘지명(1330)』 “立武宗皇帝公常居左右贊襄之人無知者由朝顯總郎, 六遷爲三司左使, 皆奉翊. 尋轉僉議評理三司使(『고려사』 세가, 1324년 2월) 僉議贊成事, 階重大臣.”
- 206)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父皇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護軍諱瑄.”
- 207) 『최안도(崔安道) 묘지명(1340)』 “至順九年(원년의 오기? 1330), 登副密直司階奉翊, 尋改監察大夫同知密直司事錫協謀同德功臣之號.”
- 208) 『전신(全信) 묘지명(1339)』 “至順庚午(1330), 起拜監察大夫進賢館大提學上護軍, 階奉翊.”
- 209)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 進奉翊. …… 甲申(1344), 明陵卽好授典理判書轉監察大夫. 乙酉(1345), 入密直爲提學, 帶上護軍歷副使, 知司事. 明年(1346), …… 己丑(1349), 聰陵入朝公從之既踐位以其勞授僉議參里藝文館大提學 ……”
- 210) 『이암(李岳) 묘지명(1364)』 “庚辰(1340), 復職知申事俄改成均大司成, 階奉翊.”
- 211)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日鉉宣授王府斷事官奉翊大夫版圖判書上護軍.”
- 212)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日鎬奉翊大夫典法判書上護軍.”
- 213)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日鈞宣授奉議大夫隆祥提點所提點奉翊大夫典工判書上護軍.”
- 214) 『권렴(權廉) 묘지명(1340)』 “次適元朝翰林學士承旨榮祿大夫普達實理次適奉翊大夫判典儀寺事吳仲和.”
- 215) 『권부(權溥) 처 유씨(柳氏) 묘지명(1344)』 “曾孫宣武將軍合浦鎮邊萬戶府萬戶奉翊大夫右常侍權

〈표 10〉 충렬왕대 봉익대부 보유자들의 역임 관직(고위·중급·하위 밀직별로 음영구분)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이존비	1279직후	봉익	동지밀직, 지밀직, 판밀직, 감찰대부, 좌우상시 ²²⁶⁾	4→3→1밀직(중2) 감찰대부, 비재신(정3)	본인
채모	1281이후	봉익	전법판서, 전리판서, 감찰대부, 승지, 지신사, 부사, 지밀직사사 ²²⁷⁾	비→7→5→3밀직(중2), 감찰대부	본인
나유	1289전후	봉익	지밀직사사 군부판서 ²²⁸⁾	3밀직(중2) 6부상서	나익희(아들)
김변	1298	봉익	부지밀직, 감찰대부 ²²⁹⁾	4.5밀직(중2) 감찰대부	본인
김선	1300이전	봉익	부지밀직사사 전법판서 ²³⁰⁾	4.5밀직(중2), 6부상서	김방경(부친)
조변	1300	봉익	부지밀직사사 전리판서 ²³¹⁾	4.5밀직(중2), 6부상서	김방경(장인)

鑑書篆.”

- 216) 『나익희(羅益禧) 묘지명(1344)』 “女適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上護軍崔文度.”
- 217) 『나익희(羅益禧) 묘지명(1344)』 “男曰英傑今爲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
- 218) 『이인복(李仁復) 묘지명(1375)』 “…… 明年(1345) …… 其冬以奉翊大夫判書軍簿, 又明年(1346) 移典理, 冬十月, 明陵曰李某今可大用, 進拜密直提學 …… 明年(1347) 春, 進密直副使, 秋進知司 …….”
- 219)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又明年(1347), …… 夏進知申事知典理, 秋拜奉翊大夫典理判書, 館職如故.” 정사도의 경우 지신사, 지전리 역임 당시에는 아직 봉익대부가 아니었으며, 그 바로 아래의 문산계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220) 『이강(李岡) 묘지명(1368)』 “…… 爲代言知申事提學副使, 歷內外制館職, 至大提學官 至奉翊大夫. 聰陵(충정) ……” 이 경우 지신사, 제학, 밀직부사 역임시의 관계는 봉익대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 221) 『권준(權準) 묘지명(1352)』 “門人征東行中書省左右司都事奉翊大夫密直司使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李仁復撰.”
- 222)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曰童生, 今爲奉翊大夫典工判書.”
- 223)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乙未(1355) 正月 …… 拜奉翊大夫判典校寺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 其秋再遷版圖判書典理判書.”
- 224) 『김태현(金台鉉) 처 왕씨(王氏) 묘지명(1358)』 “女一人適奉翊大夫右常侍閔愉.”
- 225) 『최재(崔宰) 묘지명(1378)』 “公再娶靈山郡夫人辛氏奉翊大夫判密直司事書藝文館提學致仕諱藏之女也.”
- 226) 『이존비(李尊庇) 묘지명(1287)』 “卒奉翊大夫同判密直司事左常侍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李公墓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전승	1301	봉익	지밀직사사 판도판서 ²³²⁾	3밀직(중2) 6부상서	김변(사돈)
오잡	1301	봉익	동지밀직사사, 지밀직사사, 감찰대부 ²³³⁾	4밀직→3밀직(중2) 감찰대부	본인
곽예	1303전	봉익	지밀직사사 감찰대부 ²³⁴⁾	3밀직(중2) 감찰대부	최재(외손)
최서	1305	봉익	부지밀직사사 판도판서 ²³⁵⁾	4.5밀직(중2), 6부상서	본인
윤만비	1305	봉익	부지밀직사사 ²³⁶⁾	4.5밀직(중2)	윤지표(손자)
이백년	1305전후	봉익	밀직부사 ²³⁷⁾	5밀직(정3)	윤지표(외손)
박부	13세기 후반	봉익	밀직부사 군부판서 ²³⁸⁾	5밀직(정3) 6부상서	최서처박씨 (딸)
조변	1288전후	봉익	밀직부사 ²³⁹⁾	5밀직(정3)	최서처박씨 (사돈)
권단	1288	봉익	밀직학사, 판도판서, 전리판서 ²⁴⁰⁾	7밀직(정3), 6부상서	본인
원관	1294~1296	봉익	밀직학사, 지밀직사사 삼사사, 판도판서 ²⁴¹⁾	7밀직(정3), 3밀직(중2), 6부상서, 삼사사	본인
채인규	1295	봉익	밀직학사 ²⁴²⁾	7밀직(정3)	본인
김태현	1300	봉익	밀직부사, 감찰대부 ²⁴³⁾	5밀직(정3) 감찰대부	본인
김중보	1301	봉익	밀직부사 판도판서 ²⁴⁴⁾	5밀직(정3) 6부상서	김변(동생)
최서	1301	봉익	밀직부사 ²⁴⁵⁾	5밀직	김변(사돈)
안우기	1305	봉익	밀직부사, 지밀직사사, 대사헌, 민부전서, 총부전서 ²⁴⁶⁾	5밀직(정3), 3밀직(중2), 대부, 6부상서	본인

誌.”; “四十七(1232년생, 1279), 批除中議大夫密直司副使版畺判書文翰學士. 尋除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知密直同判密直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監察大夫左右常侍.”

227) 『채모(蔡謨) 묘지명(1302)』 “辛巳(1281), …… 階歷中列榮列正潤奉翊大夫, 官歷監門衛司巡衛上將軍知軍簿知典理三司使典法典理判書監察大夫皆兼上將軍, 於密直則左右副左右承旨知院事(지신사의 오기인 듯)副使知司事.”

- 228) 『나익희(羅益禧) 묘지명(1344)』 “皇懷遠大將軍管軍上萬戶奉翊大夫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將軍世子元賓諱禧爲公考.” (『고려사』 세가, 1289년 3월 이후 지밀직사사로 등장)
- 229) 『김변(金賸) 묘지명(1301)』 “戊戌(1298), 爲奉翊大夫副知密直, 是年出爲西北面都指揮使, 入爲監察大夫.”
- 230) 『김방경(金方慶) 묘지명(1300)』 “瑄爲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將軍先公卒.”
- 231) 『김방경(金方慶) 묘지명(1300)』 “一女適參知政事趙季恂之二子忭, 忭仕至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上將軍典理判書.”
- 232) 『김변(金賸) 묘지명(1301)』 “二男近時別將, 禡歸奉翊大夫知密直司事版圖判書文翰學士承旨全公昇之女.”
- 233) 『오잠(吳潛) 묘지명(1336)』 “自大德二年(1298)至五年(1301)凡四年執政, 九月 加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文翰學事應旨上護軍 …… 六年(1302)正月, 知密直司事餘如故, …… 七月加監察大夫餘如故.”
- 234) 『최재(崔宰) 묘지명(1378)』 “選部娶奉翊大夫知密直司事監察大夫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郭公諱預之女, 以大德癸卯(1303) 四月癸酉, 生公.”
- 235) 『최서(崔瑞) 묘지명(1305)』 “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版圖判書文翰學士致仕崔瑞墓誌.”
- 236) 『윤지표(尹之彪) 묘지명(1382)』 “忠烈王爲己巳一等功臣卒官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上護軍.”
- 237) 『윤지표(尹之彪) 묘지명(1382)』 “海平娶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李公諱百年之女.” 위 윤만비의 사례를 감안하여 이백년의 사례 또한 일단 충렬왕대로 비정하였다.
- 238)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奉翊大夫密直副使軍簿判書上將軍諱璋之第三女.”
- 239)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次女適承奉郎總部散郎趙文瑾, 奉翊大夫密直副使上將軍棼之三子.” (『고려사』 세가, 1288년 7월 조변 사망)
- 240) 『권단(權坦) 묘지명(1312)』 “戊子(1288), 除奉翊大夫密直學士版圖判書文翰學士承旨旋躡典理判書.”
- 241) 『원관(元權) 묘지명(1316)』 “甲午(1294), 拜奉翊大夫(三)司使(文)(翰)學(士)承旨, 丙申(1296), 授[密直學士(김용선의 추정에 따름)], 累知密直司事版圖判書.”
- 242) 『채인규(蔡仁揆) 묘지명(1303)』 “乙未(1295), …… 是月(9월) 超拜爲奉翊大夫密直學士國子監大司成文翰學士.”
- 243) 『김태현(金台鉉) 묘지명(1330)』 “庚子(1300), 拜奉翊大夫密直副使兼監察大夫.”
- 244) 『김변(金賸) 묘지명(1301)』 “三兄, 奉翊大夫密直副使版圖判書致仕諱仲甫今無恙.”
- 245) 『김변(金賸) 묘지명(1301)』 “一男, 牽龍行首郎將倫, 歸奉翊大夫密直副使文翰學士致仕崔公瑞之女.”
- 246) 『안우기(安于器) 묘지명(1329)』 “明年(1305), 進拜奉翊大夫密直副使文翰司學承旨, 累加至知密直司事 大司憲 民部總郎[部]의 오기인듯[二典書].”

〈표 11〉 14세기전반 ‘삼중대광(삼중)’ 및 ‘벽상삼한삼중대광(벽상)’ 보유 사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정가신	미상 (추증)	벽상	문하시중 판이부사 ²⁴⁷⁾	증직 (침의중찬으로 1298년 사망)	박전지처최씨 (사돈)
조인규	미상 (추증)	벽상	판중서문하성사 ²⁴⁸⁾	증직 (판도침의사사, 자의도침의사사로 1308년 사망)	조연수(아들)
민지	1321	삼중	검교침의정승 ²⁴⁹⁾	검교직	김순(찬)
김심	1321	벽상/ 삼중/ 삼중	도침의우정승 판총부 판사헌부사(1321)/ 수침의정승 판전리사사(1325) / 도침의중찬(1330) ²⁵⁰⁾	실직(實職)/ 수직(守職)/ 실직	본인
박전지	1325	삼중	수침의정승 ²⁵¹⁾	수직	본인
민지	1325	삼중 / 벽상	침의정승(1325) 판침의부사(판도침의사사, 1326) ²⁵²⁾	정승/판사	본인 나익희(사위) 신씨(배우자)
김태현	1327	벽상/ 삼중	침의중찬, 판전리사사 ²⁵³⁾	치사/치사	김수처고씨 (모친) 본인
윤석	1340년대	벽상	도침의우정승 판전리사사 ²⁵⁴⁾	실직	윤지표(아들)
이제현	1344	삼중	판삼사사 ²⁵⁵⁾		권부처유씨 (찬)
홍세	14세기 전반	삼중	도침의정승 판전리사사(추증) ²⁵⁶⁾	증직	홍빈(손자)

247) 『박전지(朴全之) 처 최씨(崔氏) 묘지명(1316)』 “女適銀青光祿大夫檢校叅知政事鄭悼, 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侍中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吏部翰林院事可臣之子也.” 정가신은 1298년 사망하였으므로, 이 관계는 추증계(追贈階)로 보인다.

248) 『조연수(趙延壽) 묘지명(1325)』 “考 宣授嘉議大夫王府斷事官宣忠翊戴保祚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判中書門下省事平壤君贈諡貞肅公仁規.” 조인규도 1308년 사망했으므로 이 관계는 추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9) 『김순(金恂) 묘지명(1321)』 “宣授 朝烈大夫 翰林直學士 三重大匡 檢校僉議政丞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驪興君 閔漬.”

250) 『김심(金深) 묘지명(1339)』 “至治元年(1321) 辛酉上以公爲舊德 特授 壁上三韓三重大匡 都僉議 右政丞 判總府·司憲府事上護軍化平府院君 …… 泰定二年乙丑(1325), 輸誠守義忠亮功臣 三重大

〈표 12〉 14세기전반 통헌대부 보유 사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유자우	1308	통헌	검교선부전서, 검교첨의평리 ²⁵⁷⁾	3재신, 6부상서	본인
이언충	1308	통헌	검교선부전서, 행전의령, 사헌집의 ²⁵⁸⁾	6부상서, 사헌집의	본인
민적	1309	통헌	평양윤, 선부전서, 언부전서 ²⁵⁹⁾	6부상서	본인
유돈	1310이후	통헌	사헌부집의, 언부전서, 대언 ²⁶⁰⁾	6부상서, 집의, 비밀직	본인
원충	1316	통헌	밀직부사, 좌상시 ²⁶¹⁾	5밀직, 비재신	본인 원관(부친)
윤신걸	1316	통헌	밀직부사, 선부전서, 동지밀직사사, 지밀직사사, 밀직사 ²⁶²⁾	5·4·3·2밀직, 6부상서	본인
김륜	1318	통헌	밀직부사 ²⁶³⁾	5밀직	최서처박씨 (장모)

匡 守僉議政丞判典理司事上護軍化平府院君 …… 至順二年(1330) 庚午輪誠守義協輔忠亮功臣 三重大臣 都僉議中贊判典理司事化平府院君.” 이 경우 뒤의 두 ‘삼중대광’ 용례는 앞의 벽상삼한삼중대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51)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泰定乙丑(1325) 四月, 加授三重大臣 守僉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 春秋館事上護軍致仕.”
- 252) 『민지(閔漬) 묘지명(1326)』 “有元高麗國推誠守正保理功臣 三重大臣 判僉議府事 右文館大提學監 春秋館事 上護軍驪興府院君;” “泰定乙丑(1325), 授推誠守正保理功臣 三重大臣 僉議丞政右文館大提學驪興君 …… 三年(1326), 加封 判僉議府事 驪興府院君.”; 『나익희(羅益禧) 묘지명(1344)』 “娶翰林直學士朝列大夫 三重大臣 判都僉議司事 默軒先生閔諱漬之女 ……” 그런데 그의 관계가 그의 배우자 묘지명에는 ‘벽상삼한 삼중대광’으로 기록돼 있다(『민지(閔漬) 처 신씨(申氏) 묘지명(1337)』 “泰正三年丙寅公以推誠守正保理功臣 壁上三韓三重大臣 判都僉議司事右文館大提學監 春秋館事上護軍驪興府院君.”).
- 253) 『김수(金須) 처 고씨(高氏) 묘지명(1327)』 “今 壁上三韓三重太臣 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館大提學監 春秋館事 上護軍判典理司事致仕台鉉之母.” 한편 본인의 묘지명에는 그의 관계가 ‘삼중대광’으로만 기록돼 있다. 『김태현(金台鉉) 묘지명(1330)』 “丁卯(1327), 復忠烈時官制以 三重大臣 僉議中贊修文館大提學兼春秋館上護軍判典理司事致仕 ……”
- 254) 『윤지표(尹之彪) 묘지명(1382)』 “諱頌政丞公也朝廷使者至政丞時爲 …… 忠肅王也公從朝京師僚佐未有居公右者其後歷官至都僉議右政丞判典理司事封海平府院君階壁上三韓三重大臣.”
- 255) 『권부(權溥) 처 유씨(柳氏) 묘지명(1344)』 “子壻推誠亮節佐理功臣 三重大臣 判三司事領藝文館事 上護軍李齊賢諱.”
- 256) 『홍빈(洪彬) 묘지명(1354)』 “祖諱世, 贈 三重大臣 都僉議政丞 判典理司事 上護軍.”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배정지	1318	통헌	밀직부사 ²⁶⁴)	5밀직	본인
노승세	1321전	통헌	민부전서 ²⁶⁵)	6부상서	윤보처박씨 (사돈)
최득평	1310~1320 년경	통헌	선부전서 ²⁶⁶)	6부상서	최재(아들)
원선지	1321	통헌	판선공시사, 대사헌, 판전의시사 ²⁶⁷)	대사헌 선공시, 전의시 판사	본인
배영	1322이전	통헌	민부전서(추증) ²⁶⁸)	6부상서	배정지(아들)
배정지	1322	통헌	밀직부사 ²⁶⁹)	5밀직	본인
이제현	1322	통헌	전 지밀직사사 총부전서 ²⁷⁰)	3밀직, 6부상서	배정지(찬)
민적	1324	통헌	전 동지밀직사사 ²⁷¹)	4밀직	민중유(부친)
박화	1325	통헌	밀직부사 ²⁷²)	5밀직	본인
윤선좌	1325	통헌	판전교시사, 민부전서 ²⁷³)	전교시판사, 6부상서	본인
박효수	1325	통헌	밀직부사 ²⁷⁴)	5밀직	박전지(찬)
최운	1325	통헌	지밀직사사 우상시 ²⁷⁵)	3밀직, 비재신	본인
김승용	1329이전	통헌	동지밀직사, 밀직사 ²⁷⁶)	4밀직, 2밀직	본인

- 257) 『유자우(庾自偶) 묘지명(1313)』 “明年(1308), 除通憲大夫檢校選部典書行都津令俄遷檢校僉議評理 行尙州牧使兼上洛星山道田民計點使.”
- 258) 『이언충(李彦冲) 묘지명(1338)』 “甲午年(1294) …… 累轉軍簿佐郎正獻大夫大司成進賢館提學知製教通憲大夫檢校選部典書行典儀令兼司憲執義 ……(『고려사』 세가, 1308년 9월 전의겸관.)”
- 259) 『민적(閔頤) 묘지명(1336)』 “尋以通憲大夫出爲平壤尹(『고려사』 세가, 1309년 12월), 今王卽政除選讞二部典書皆帶寶文閣提學上護軍.”
- 260) 『유돈(柳墩) 묘지명(1349)』 “三轉爲通禮門祗候七遷至選部議郎除密直司左副代言(『고려사』 세가, 1310년 10월)成均祭酒, 徙司憲府執義讞部典書皆兼代言, 逮加通憲.”
- 261) 『원충(元忠) 묘지명(1337)』 “延祐三年(1316), 拜通憲大夫密直副使左常侍上護軍.”; 『원관(元瓘) 묘지명(1316)』 “長日忠 □ □ 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
- 262) 『윤신걸(尹莘傑) 묘지명(1337)』 “(연우)三年(1316) 拜通憲大夫密直副使兼選部典書遷同知密直知密直密直使陞藝文大提學知春秋館階匡靖 又錫號純誠輔理功臣.”
- 263) 『최서(崔瑞) 처 박씨(朴氏) 묘지명(1318)』 “長女適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金倫.”
- 264) 『배정지(裴廷芝) 묘지명(1322)』 “延祐戊午(1318) …… 王大悅 特授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 ……”
- 265) 『윤보(尹誥) 처 박씨(朴氏) 묘지명(1321)』 “次日安淑大殿寶馬陪行首郎將, 媿通憲大夫民部典書致仕盧承世皇之第一女.”

〈표 13〉 공민왕대의 중대광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민사평	1359	중대광	도첨의찬성사 ²⁷⁷⁾	2재신(정2)	본인
이인복	1362~1363	중대광	첨의평리, 삼사좌사, 도첨의찬성사 ²⁷⁸⁾	3재신(중2) 2재신(정2)	본인
최재	1365	중대광	전리판서 ²⁷⁹⁾	6부상서	본인
윤지표	1372	중대광	평리 ²⁸⁰⁾	3재신(중2)	본인
한수	1380	중대광	첨서(밀직사사) ²⁸¹⁾	6밀직(정3) (3.5밀직, 중2) ²⁸²⁾	본인

266) 『최재(崔宰) 묘지명(1378)』 “諱得枿, 通憲大夫選部典書上護軍致仕.” 최득평은 1314년 2월 민부의랑으로 등장하므로, 그의 선부전서, 통헌대부 보유시점은 1310~1320년대 사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67) 『원선지(元善之) 묘지명(1330)』 “至治辛酉(1321), 起判繕工寺拜通憲大夫尋改大司憲移判典儀寺.”

268) 『배정지(裴廷芝) 묘지명(1322)』 “考贈通憲大夫民部典書府君諱榮.”

269) 『배정지(裴廷芝) 묘지명(1322)』 “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提調德泉倉事提舉永安宮事裴公墓誌銘.”

270) 『배정지(裴廷芝) 묘지명(1322)』 “前通憲大夫知密直司事愨部典書進賢館大提學上護軍李齊賢撰.”

271) 『민중유(閔宗儒) 묘지명(1324)』 “一男曰頤, 登至元乙酉第, 今爲通憲大夫前同知密直司事.”

272) 『박화(朴華) 묘지명(1336)』 “泰定元年(1324), 仁幹從太尉王廻自吐蕃於是又起任廣州牧, 明年(1325) 以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致仕.”

273) 『윤선좌(尹宣佐) 묘지명(1349)』 “乙丑(1325), 王歸國, 除判典校階通憲俄以民部典書.”

274) 『박전지(朴全之) 묘지명(1325)』 “前通訓大夫(통헌대부의 오기인 듯)密直副使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本宗人號石齋朴孝修撰.” 통헌대부가 원(元) 문산계의 ‘봉헌대부’일 수도 있겠으나 가능성은 낮다.

275) 『최운(崔雲) 묘지명(1325)』 “泰定乙丑(1325) 四月, 起授通憲大夫知密直司事右常侍上護軍.”

276) 『김승용(金承用) 묘지명(1329)』 “…… 同知密直事密直使, 皆館大學士上將軍, 階奉常中顯中正奉順通憲至匡靖大夫此其詳也.”

277) 『민사평(閔思平) 묘지명(1359)』 “高麗故輸誠秉義協贊功臣重大匡都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進賢館大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 贈諡文溫公閔公墓誌銘并序.”

278) 『이인복(李仁復) 묘지명(1375)』 “明年(1362) …… 俄拜僉議評理, 冬進重大匡三司左使. 癸卯(1363), 春拜都僉議贊成事 ……”

279) 『최재(崔宰) 묘지명(1378)』 “歲甲辰(1364), 拜監察大夫進賢館提學同知春秋館事, 其冬封重大匡完山君. 明年(1365) 移典理判書.”

〈표 14〉 공민왕대 광정대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유숙	1362~1364	광정	지도첨의사사, 평리, 정당문학, 감찰대부, 첨의찬성사 ²⁸³⁾	5→3→4재신(종2), 2재신(정2)	본인
정사도	1374~1375	광정	지문하성사, 정당문학, 평리상의 ²⁸⁴⁾	5→4→3재신(종2)	본인
이보림	1376	광정	정당문학 ²⁸⁵⁾	4재신(종2)	이제현(조부)
우인열	1378	광정	문하평리 ²⁸⁶⁾	3재신(종2)	최재(장인)

〈표 15〉 공민왕대 봉익대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윤수평	1370이전	봉익	밀직부사(추증) ²⁸⁷⁾	5밀직(정3)	윤택(아들)
최재	1362~1364	봉익	전법판서, 감찰대부 ²⁸⁸⁾	6부상서 어사대부	본인
윤해	1364	봉익	판전의시사 ²⁸⁹⁾	전의시판사	본인
박대양	1374	봉익	전법판서 ²⁹⁰⁾	6부상서	박윤문처김씨(아들)
이수림	1376	봉익	동지밀직사사 ²⁹¹⁾	4밀직(정3)	이제현(조부)

280) 『윤지표(尹之彪) 묘지명(1382)』 “明年(1371), 知門下省事商議會議都監事. 又明年(1372), 進評理, 冬封重大匡海平君.”

281) 『한수(韓脩) 묘지명(1392)』 “…… 己未(1379) 冬, 以書光巖碑功復簽書, 明年(1380) 春, 封清城君階重大匡.”

282) 종래 추밀원부사의 아래에 있었던 첨서추밀원사는 공민왕11년(1362) 관제개편에서 지밀직사사와 동지밀직사사의 사이로 승격되었다. 이후 공민왕21년(1372) 개편에서 1362년의 관제가 복구되었다면 1380년에도 첨서밀직사사는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83)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明年(1362) …… 三月以知都僉議 召進階 匡靖大夫 …… 冬遷評理 提點書雲觀事 …… 召歲癸卯(1363) …… 拜政堂文學, 冬十月兼監察大夫, 歲甲辰(1364), 進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領書雲觀事 ……”

284)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今上即位(1374) 進匡靖大夫知門下省事, 未幾拜政堂文學知書筵事館職並如故, 明年(1375) 改評理商議.”

285)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宗簿娶密直使兼監察大夫洪侑之女生一男二女, 男曰寶林, 匡靖大夫政堂文學商議會議都監事進賢閣大提學上護軍.”

286) 『최재(崔宰) 묘지명(1378)』 “務安郡夫人朴氏軍簿正郎諱允鏐之女也, 朴氏生 …… 女適誠勳翊戴功臣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禹仁烈 ……”

287) 『윤택(尹澤) 묘지명(1370)』 “考守平, 贈奉翊大夫密直副使先正獻歿.”

기인걸	1376	봉익	동지추밀원사 ²⁹²⁾	4밀직(정3)	이제현 (처조부)
윤호	1376	봉익	밀직부사 상호군 ²⁹³⁾	5밀직(정3)	윤해(부친)
조무	1376	봉익	판위위시사 ²⁹⁴⁾	위위시판사	이제현 (처조부)
안익	1376	봉익	판선공시사 ²⁹⁵⁾	선공시판사	(이제현사위 이계손의 사위)
최사미	1378	봉익	예의관서 ²⁹⁶⁾	6부상서	최재(부친)
유실	1379	봉익	밀직부사 ²⁹⁷⁾	5밀직(정3)	유숙(부친)
윤가관	1382	봉익	밀직부사 ²⁹⁸⁾	5밀직(정3)	윤지표(조부)

〈표 16〉 공민왕대초 고위 3관계 보유 사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이인복	1356~1360	금자광 록대부	정당문학, 어사대부(1356), 참지중서정사(1360) ²⁹⁹⁾	4→3재신(종2) 어사대부	본인
왕정조	1358이전	은청광 록대부	추밀원사 호부상서 ³⁰⁰⁾	2밀직(종2) 6부상서	김태현처왕씨 (딸)
김희조	1376	은청광 록대부	첨서추밀원사 ³⁰¹⁾	6밀직(정3) (3.5밀직, 종2)	이제현(장인)

288) 『최재(崔宰) 묘지명(1378)』 “明年(1362) 春 …… 三月, 以奉翊大夫典法判書分司本京公辭違 …… 歲甲辰(1364), 拜監察大夫進賢館提學同知春秋館事 ……”

289) 『윤해(尹倝) 묘지명(1380)』 “歲甲辰(1364), 進奉翊大夫判典儀寺事.”

290) 『박윤문(朴允文) 처 김씨(金氏) 묘지명(1374)』 “次大陽, 奉翊大夫典法判書實文閣提學上護軍.”

291)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日壽林, 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 ……”

292)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女適奉翊大夫開城尹光祿大夫同知樞密院事奇仁傑.”

293) 『윤해(尹倝) 묘지명(1380)』 “長日虎, 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

294)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女適通憲大夫判衛尉寺事趙茂.”

295)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典農正生二男一女長日隣郎將次日亮中郎將女適通憲大夫(봉익대부의 오기 추정)判繕工寺事安翊.”

296) 『최재(崔宰) 묘지명(1378)』 “公再娶靈山郡夫人辛氏, 奉翊大夫判密直司事藝文館提學致仕諱藏之女也. 辛氏生二男. 長思美奉翊大夫禮儀判書次德成及第中正大夫三司左尹.”

297)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男實奉翊大夫密直副使商議會議都監事上護軍.”

298) 『윤지표(尹之彪) 묘지명(1382)』 “日可觀, 今爲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유숙	1356	은청영 록대부	추밀원직학사 ³⁰²⁾	7밀직(정3)	본인
한수	1371	은청영 록대부	이부상서 ³⁰³⁾	6부상서	본인

〈표 17〉 공민왕대 정순대부 보유 사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이승	1364	정순	판전객시사 ³⁰⁴⁾	정3	이암(부친)
김묘	1376	정순	판전객시사 ³⁰⁵⁾	정3	이제현(사돈)
임덕수	1376	정순	판사복시사 ³⁰⁶⁾	정3	이제현(장인)
이승원	1376	정순	판위위시사 ³⁰⁷⁾	정3	이제현(처증조)
박동생	1376	정순	판전농시사 ³⁰⁸⁾	정3	이제현(장인)

- 299) 『이인복(李仁復) 묘지명(1375)』 “歲乙未(1355) 春, 先生辭政府封星山君, 秋復政堂, 冬授征東省員外郎又兼監察大夫 …… 歲丙申(1356), 官制行拜金紫大夫依前政堂文學寶文閣大學士同修國史判翰林院事又兼御史大夫. 庚子(1360), 拜叅知中書政事.”
- 300) 『김태현(金台鉉) 처 왕씨(王氏) 묘지명(1358)』 “考諱丁朝, 贈銀青光祿大夫樞密院使戶部尙書翰林學士承旨.”
- 301)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適銀青光祿大夫簽書樞密院事翰林院大學士金希祖封義和宅主.”
- 302)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歲丙申(1356), …… 五月, 奇氏之難作入密直爲提學官制行拜銀青光祿大夫樞密院直學士翰林學士承旨上將軍.”
- 303) 『한수(韓脩) 묘지명(1392)』 “歲乙巳(1365) 春 …… 夏判書禮儀秋進軍簿蓋疎之也 …… 歲辛亥(1371) 秋屯敗, 上曰韓某有先見之明可急召來乃授榮祿大夫理部尙書修文殿學士居數日 ……” (공민왕18년 관계에서는 공민왕5년 당시의 은청영록대부가 승록대부로 변경. 따라서 1371년의 은청영록은 오기로 보임.)
- 304) 『이암(李岳) 묘지명(1364)』 “次崇正順大夫判典客寺事.”
- 305)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繼室正順大夫判典客寺事金昂之女.”
- 306)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女適正順大夫判司僕寺事任德壽.”
- 307)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女適正順大夫判衛尉寺事李承源.”
- 308)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女適正順大夫判典農寺事朴東生.”

〈표 18〉 공민왕대 봉순·중정·중현·봉상·봉선대부 보유 사례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모지명
박보생	1355	봉순	관위위시사 ³⁰⁹⁾	정3	박원계(부친)
한수	1362~1363	봉순	판사복시사, 부대언, 지공부사, 대언 ³¹⁰⁾	사복시판사,비밀 직(정3) 6부지사(3-4품)	본인
박밀양	1374	봉순	판전교시사 ³¹¹⁾	정3	박윤문처김씨 (모친)
송무	1376	봉순	판전교시사 ³¹²⁾	정3	이제현(장인)
허종도	1381	봉순	판사재시사 ³¹³⁾	정3	허옹처이씨 (모친)
한수	1361	중정	전의령, 전교령 ³¹⁴⁾	종3	본인
이인	1364	중정	중부령 ³¹⁵⁾	종3	이암(부친)
박계양	1374	중정	비서감 ³¹⁶⁾	종3	박윤문처김씨 (모친)
김남우	1376	중정	삼사우윤 ³¹⁷⁾	종3	이제현(장인)
이계손	1376	중정	전농정 ³¹⁸⁾	종3	이제현(장인)
박영충	1376	중정	친어군대호군 ³¹⁹⁾	종3	(이제현사위 임택수의 사위)
최덕성	1378	중정	삼사좌윤 ³²⁰⁾	종3	최재(부친)
최유경	1378	중정	중부령 지전법사사 ³²¹⁾	중부령(종3) 6부지사(3-4품)	최재(부친)
김구용	1379	중정	삼사좌윤 ³²²⁾	종3	김묘처민씨 (모친)
박거실	1376이전	중현	사복정 ³²³⁾	종3(정3)	이제현(사위)
정유	1379이전	중현	중부령 ³²⁴⁾	종3	정사도(아들)
김홍조	1368이전	중현	군기감 ³²⁵⁾	종3	김광재(부친)
이학립	1376	중현	소부윤 ³²⁶⁾	종3	이제현(조부)
김자충	1379	중현	선공령 ³²⁷⁾	종3	유숙(장인)
최용	1376이전	봉상	사헌장령 ³²⁸⁾	종4	윤해(사위)
이용	1375이전	봉상	전법총랑 ³²⁹⁾	정4	이인복(부친)
이서종	1376	봉상	중부부령 ³³⁰⁾	종4	이제현(부친)
이달존	1376	봉상	전리총랑 ³³¹⁾	정4	이제현(부친)
채유길	1379이전	봉상	헌부의랑 ³³²⁾	정4	정사도(외손)

고려 충선왕대의 문산계 개편 및 이후의 변화

이름	보유연도	관계	관직	관직관련	묘지명
유후	1379	봉상	군부총랑 ³³³⁾	정4	유숙(부친)
허소유	1381이전	봉상	감찰장령 ³³⁴⁾	종4	허옹치이씨 (모친)
이호	1381	봉상	삼사부사 ³³⁵⁾	정4	허옹치이씨 (장모)
박문수	1371	봉선	내부부령 ³³⁶⁾	종4	김광재(장인)
박충	1371	봉선	좌우위보승호군 ³³⁷⁾	정4	김광재(외조)
황간	1376	봉선	소부윤 ³³⁸⁾	종3	(이제현 사위 임덕수의 사위)
이유방	1376	봉선	전의부정 ³³⁹⁾	종4	이제현(장인)
이순의	1376	봉선	군기소윤 ³⁴⁰⁾	종4품급	(이제현 사위 임덕수의 아들)
박경	1376	봉선	군기소윤 ³⁴¹⁾	종4품급	(이제현2처 딸의남편 박동생의 아들)
김제안	1379	봉선	전교부령 ³⁴²⁾	종4	김묘처민씨 (모친)
장강	1381	봉선	전의부정 ³⁴³⁾	종4	허옹치이씨 (장모)

309) 『박원계(朴元桂) 묘지명(1355)』 “男二人曰寶生官至奉順大夫判衛尉寺事.”
 310) 『한수(韓脩) 묘지명(1392)』 “明年(1362) 秋, 還京, 加奉順大夫判司僕寺事右文館直提學. 冬拜密直
 司左副代言寶文閣直提學知工部事蓋用公知銓選也. 明年(1363) 進右副代言又進左代言.”
 311) 『박윤문(朴允文) 처 김씨(金氏) 묘지명(1374)』 “長密陽奉順大夫判典校寺事.”
 312)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適奉順大夫判典校寺事宋懋.”
 313) 『허옹(許邕) 처 이씨(李氏) 묘지명(1381)』 “次日宗道奉順大夫判司宰寺事於夫人歿之明年某月卒.”
 314) 『한수(韓脩) 묘지명(1392)』 “歲辛丑(1361), 國家避沙賊于安東, 再轉典儀典校二舍皆中正.”
 315) 『이암(李岳) 묘지명(1364)』 “寅中正大夫宗籙舍.”
 316) 『박윤문(朴允文) 처 김씨(金氏) 묘지명(1374)』 “次啓陽中正大夫秘書監以非罪廢物論寃之.”
 317)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適中正大夫三司右尹金南雨.”
 318)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適中正大夫典農正李係孫.”
 319)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司僕生二男四女, 長男曰純義奉善大夫軍器少尹 次日純禮中
 郎將 長女適通直郎起居郎知製教申渾 次適中正大夫親禦軍大護軍朴永忠 ……”
 320) 『최재(崔宰) 묘지명(1378)』 “次德成及第中正大夫三司左尹.”

- 321) 『최재(崔宰) 묘지명(1378)』 “朴氏生子三人男日有慶中正大夫宗簿令知典法司事.”
- 322) 『김묘(金昴) 처 민씨(閔氏) 묘지명(1379)』 “男三人長九容前中正大夫三司左尹進賢館直提學知製教充春秋館編修官.”
- 323)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壽春國夫人朴氏宣授西京等處萬戶府副萬戶中顯大夫司僕正諱居實之女 生一男三女.”
- 324)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考諱侑, 中顯大夫宗簿令.”
- 325) 『김광재(金光載) 묘지명(1371)』 “男日興祖, 倜儻有志官至中顯大夫軍器監 ……” (김홍조는 1368년 사망하였다.)
- 326)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日學林中顯大夫小府尹.”
- 327)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女三人適中顯大夫繕工令金子忠.”
- 328) 『윤해(尹偲) 묘지명(1380)』 “夫人崔氏奉常大夫司憲掌令諱甬之女.” (윤해는 1376년 사망하였다.)
- 329) 『이인복(李仁復) 묘지명(1375)』 “一男日容官至奉常大夫典法摠郎皆先歿.”
- 330)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男日瑞種奉常大夫宗簿副令.”
- 331)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日達尊奉常大夫典理摠郎實文閣直提學知製教.”
- 332) 『정사도(鄭思道) 묘지명(1379)』 “妣蔡氏封慶原郡夫人奉常大夫獻部議郎惟吉之女也.”
- 333) 『유숙(柳淑) 묘지명(1379추정)』 “厚奉常大夫軍簿摠郎.”
- 334) 『허옹(許翬) 처 이씨(李氏) 묘지명(1381)』 “長日少由, 奉常大夫監察堂令直實文閣先亡七男四女.”
- 335) 『허옹(許翬) 처 이씨(李氏) 묘지명(1381)』 “一女次適口(前?)奉常大夫三司副使李皓.”
- 336) 『김광재(金光載) 묘지명(1371)』 “女適奉善大夫內府副令朴門壽.”
- 337) 『김광재(金光載) 묘지명(1371)』 “內府(朴門壽)生二男, 長贇, 好學尙志前奉善大夫左右衛保勝護軍.”
- 338)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適奉善大夫小府尹黃侃.”
- 339)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次適奉善大夫典醫副正(令의 오기인 듯)李有芳.”
- 340)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長男日純義奉善大夫軍器少尹(少監의 오기인 듯).”
- 341) 『이제현(李齊賢) 묘지명(1376추정)』 “判典農生三男一女長日經, 奉善大夫軍器少尹.”
- 342) 『김묘(金昴) 처 민씨(閔氏) 묘지명(1379)』 “次齊顏中議大夫中書兵部郎中兼簽書河南江北等處行樞密院事奉善大夫典校副令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
- 343) 『허옹(許翬) 처 이씨(李氏) 묘지명(1381)』 “一女女適前奉善大夫典醫副正張綱.”